

ISBN 978-89-6114-493-3 93340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유엔인권메커니즘과 북한여성의 인권”

2016년 5월 19일(목)
09:40~18:00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Seoul

주관 : 국가인권위원회

후원 :  The World On
arirang

프로그램

- 개최일시 : 2016년 5월 19일(목) 09:40~18:00
- 개최장소 :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
- 주 제 : 유엔인권메커니즘과 북한여성의 인권
- 공동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유엔인권사무소
- 주 관 : 국가인권위원회
- 후 원 : 아리랑국제방송

시 간	내 용
~ 09:40	참가자 등록
개회식	사회 : 조영호 (인권정책과장)
09:40~10:30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망초합창단(북한이탈여성) 공연 • 개회사 : ①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② 시냐 플슨 (서울유엔인권사무소장) • 기조연설 : 북한여성 인권 상황과 제언 Marzuki Darusman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1세션 :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와 법제	
좌장 : Marzuki Darusman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10:30~12:30 (120분)	<p> 토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구조와 제도적 차원에서 북한여성의 지위와 현실 한동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 ② 사례를 통해 살펴본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 윤남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 ③ 북한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 ④ 북한여성 인권 실태 Phil Robertson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 ⑤ 탈북여성의 정신건강 문제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장)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2:30~13:40	오찬
2세션 : 여성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유엔인권메커니즘 좌장 : 신혜수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	
13:40~15:40 (120분)	 토론 ① 유엔의 여성 인권보호 메커니즘 안윤교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인권담당관) ② 북한 UPR 심사 절차 활용 방안과 사례 Michelle Kissenkoetter (국제인권연맹 아시아국장) ③ 국내 NGO의 유엔인권메커니즘 활용 사례와 제언 Joanna Hosaniak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 ④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북한여성인권 백범석 (경희대학교 교수) ⑤ 고문방지협약과 탈북 여성 인권 보호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15:40~16:00	Coffee break
3세션 : 북한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및 역할 좌장 : 박경서 (동국대 석좌교수)	
16:00~18:00 (120분)	 토론 ① 북한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 Patricia Goedde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②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언론의 역할 Giampaolo Pioli (유엔기자협회장) ③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EU의 역할(북한여성을 중심으로) John Sagar (주한 EU대표부 1등서기관) ④ 북한여성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여성NGO의 역할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⑤ 국제 연대를 활용한 북한인권 운동 전략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18:00	폐회

목 차

● 개회식 • 1

> 개회사 ①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3 ② 시냐 폴슨 (서울유엔인권사무소장) 7
> 기조연설 : 북한여성 인권 상황과 제언 11 Marzuki Darusman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 1세션 :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와 법제 • 13

① 사회구조와 제도적 차원에서 북한여성의 지위와 현실 15 한동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
② 사례를 통해 살펴본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 23 윤남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
③ 북한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31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
④ 북한여성 인권 실태 41 Phil Robertson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
⑤ 탈북여성의 정신건강 문제 43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장)

목 차

- 2세션 : 여성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유엔인권메커니즘 • 47
 - ① 유엔의 여성 인권보호 메커니즘 49
안윤교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인권담당관)
 - ② 북한 UPR 심사 절차 활용 방안과 사례 67
Michelle Kissenkoetter (국제인권연맹 아시아국장)
 - ③ 국내 NGO의 유엔인권메커니즘 활용 사례와 제언 69
Joanna Hosaniak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
 - ④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북한여성인권 79
백범석 (경희대학교 교수)
 - ⑤ 고문방지협약과 탈북 여성 인권 보호 85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 3세션 : 북한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및 역할 • 97
 - ① 북한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 99
Patricia Goedde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②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언론의 역할 105
Giampaolo Pioli (유엔기자협회장)
 - ③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EU의 역할(북한여성을 중심으로) 107
John Sagar (주한 EU대표부 1등서기관)



목 차

④ 북한여성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여성NGO의 역할	109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⑤ 국제 연대를 활용한 북한인권 운동 전략	127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 참가자 소개 • 131

2016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사회 : 조영호 (인권정책과장)

개회식

- > 개회사 ①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② 시냐 플슨 (서울유엔인권사무소장)
- > 기조연설 : 북한여성 인권 상황과 제언
Marzuki Darusman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개 회 사



ㅣ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와 오늘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시나 폴슨 서울유엔인권사무소장님과 1주일간의 짧은 한국 방문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해외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년간 전문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큰 기여를 해 오신 마르주기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심포지엄의 사회와 토론을 맡아주신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수많은 유엔 결의와 각종 보고서,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의 증언,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만, 굳이 그런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대 독재 권력의 3대 세습, 국제사회의 우려와 결의를 무시한 핵 개발 및 미사일 발사 시험, 초청 외신 기자들에 대한 과도한 제약과 구금 및 추방 등 최근 북한에서 벌어진 몇 가지 단적인 사례를 통해서도 북한 체제의 특성과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인사들과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한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만남을 통해 제가 느낀 것은 북한인권과 관련된 인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고, 2013년에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구성하여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차원의 포괄적인 조사와 권고를 하였으며, 북한인권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현장 조직인 서울유엔인권사무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수많은 기관과 단체, 활동가들이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만큼 국제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논의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이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며,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현재의 남북 상황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남북관계 당사국으로서의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를 위한 활동을 동시에 활발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내에는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및 여러 단체들이 북한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관 및 단체의 성격과 역할에 따라 활동 분야와 역할을 특화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인권전담 기관이자 준 국제기구로서, 국제적 인권 기준과 제도의 틀을 통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모든 인민의 평등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금년 3월말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한 총 2만 9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이 71%를 차지하고 있고, 2015년 통계만을 보면 여성 비율이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이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면서 탈북을 하는 이유는 북한 여성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주민, 특히 여성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의 길이 완전히 닫혀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북한은 2001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고, 최근 협약이행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대외적으로 여성인권 의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 북한 여성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와 인권 대화 가능성이 열려있는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인 “유엔인권메커니즘과 북한 여성의 인권”은 이와 같은 상황과 우리 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부합하며,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다양성과 전문성으로 볼 때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에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와 협력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5. 1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개 회 사



ㅣ 시나 폴슨 (서울유엔인권사무소장)

귀빈 여러분,

1. 북한인권심포지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2. 올해 심포지엄의 주제는 “유엔인권메커니즘과 북한 여성의 인권”입니다. 이 심포지엄을 주최하는데 협력하여 주신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감사 드립니다.
3. 오랫동안 유엔은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라고 인식해왔습니다. 여성의 권리에 관해 이야기 할 때, 우리는 모든 인류, 여성과 남성들, 소녀와 소년들에게 속하는 권리에 관하여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는 충분한 식량을 가질 권리, 학교에 갈 수 있는 권리, 여성이라는 이유로 적은 노동의 대가를 받지 않을 권리, 자신과 아이를 위해 안전한 상황에서 출산할 수 있는 권리, 구금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와 외부 세계 접근 등을 포함합니다.
4. 이러한 권리들은 유엔헌장,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과 여러 조약 및 표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89 개국이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이 협약은 가장 널리 비준된 법적 구속력을 지닌 인권기구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5. 하지만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 한 곳의 국가도 그 기구의 약속들을 이행했다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국가들에서는 법과 정책 때문에 여성이 토지와 재산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갖지 못합니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경제적 및 사회적 차별 때문에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취약하게 됩니다. 성별의 차이에 기반을 둔 폭력이 전세계 여성의 최소 30 퍼센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평화 및 안보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종종 등한시되었고, 과거에는 분쟁 상황에서 여성들이 직면하는 특정 위험들이 간과되었습니다. 게다가 연령, 민족, 사회적 지위나 장애 때문에 일부 여성들은 이중 또는 삼중의 차별에 직면합니다.
6. 더 많은 발전을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작년에 지속가능개발목표가 설정되었을 때, 세계의 국가들은 “양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소녀들의 권한 강화”를 목표 5(goal five)로 정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참여 및 권한강화가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평화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였습니다.
7. 유엔메커니즘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통해 인권을 개선하고 보호하는데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 달,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에 정례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 2015년, 북한은 차별철폐를 위한 시책들과 자녀들의 국적에 관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에 관련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대한 두 개의 보류사항들을 철회하려는 의도를 유엔에 통보했습니다. 2014년에 북한은 또한 여성의 권리 보호 및 개선에 관한 많은 보편적 정례검토(UPR) 제언들을 수용했습니다.
8. 그러나 공정하고 일관된 시행 없다면 이러한 시책들은 무의미합니다. 법규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가 신분에 근거해 시행되고, 법 앞의 평등 보다는 충성심에 따른 것이라면 이 시책들은 무의미합니다. 가장 취약한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고, 벽지에 살고 있는 여성, 빈곤 여성, 구금 중인 여성이나 장애여성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 시책들은 무의미합니다.

귀빈 여러분,

9. 유엔세계인권선언 초안에 공헌한 인사들 중 한 분인 엘리너 루즈벨트(Elanor Roosevelt)는 “여성은 티백과 같다. 뜨거운 물에 넣어보기 전에는 그녀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0. 지난 1년 동안, 우리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북한을 떠난 많은 여성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극단적인 수단까지 써야 했던 여성들, 성적학대와 인신매매에서 생존한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감금 중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고통 받았던 여성들, 차별과 가정폭력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들의 희망과 꿈뿐만 아니라 경험 또한 다양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에 경청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11. 우리가 여성들과 소녀들을 단순히 희생자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들 자신의 삶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변화의 주체로 생각한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12. 오늘 세션들은 광범위한 지역들을 다루게 되며, 이를 통해 많은 주제들을 더욱 상세하게 숙고해 볼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성공적인 논의와 다양한 의견 교환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5. 19.

서울유엔인권사무소장 **시냐 폴슨**

기조연설 : 북한여성 인권 상황과 제언

▮ Marzuki Darusman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2016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좌장 : Marzuki Darusman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1세션 :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와 법제

- ① 사회구조와 제도적 차원에서 북한여성의 지위와 현실
한동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
- ② 사례를 통해 살펴본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
윤남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
- ③ 북한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
- ④ 북한여성 인권 실태
Phil Robertson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
- ⑤ 탈북여성의 정신건강 문제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장)



사회구조와 제도적 차원에서 본 북한여성의 지위와 현실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Ⅰ 한동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

I. 서론

북한인권, 그 중에서도 북한여성의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북한여성의 인권실태 연구에는 북한 내 여성이 처한 현실과 지위에 대한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북한을 떠나 중국 또는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여성의 삶에 대한 조사연구도 포함된다. 북한여성 인권을 다룸에 있어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보편화된 방법론은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의 실상에 대해 직접 듣는 것이다. 본 발표문은 이러한 점을 기초로 하여 북한여성의 인권실태를 북한 내 사회구조와 제도적 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발표문에서는 북한여성 인권의 다양한 내용 중 특히 1) 북한 내 남녀평등, 2) 여성의 사회참여, 3) 가정에서의 여성권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¹⁾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북한의 사회구조와 법제도적 차원에서 북한여성의 인권보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현실과 실재를 비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기초한 심층면접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II장에서는 북한여성 인권실태를 남녀평등권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III장에서는 북한여성 인권실태를 가정에서의 여성권리의 측면에서 살펴보며, 마지막 IV장에서는 각각의 논의를 중심으로 북한사회 내 여성인권의 전반적 상황을 정리함으로써

1) 본 발표문은 통일연구원이 2016년 4월 출간한 『2016 북한인권백서』 중 북한여성의 인권실태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增補 및 改編된 것임을 밝혀 둔다.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II. 북한여성 인권실태: 남녀평등권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인권공세에 대하여 “우리 공화국에는 인권문제가 없다”는 부인전략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조약에 부분적이거나 참여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관련하여 북한이 당사국인 자유권규약(ICCPR) 제3조를 보면,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이 당사국인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3조에서는 “당사국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여성의 발전과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77조에서는,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법규와 북한이 가입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핵심조항들은 남녀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이러한 여러 조항들을 현실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또다른 측면의 문제이며, 면밀한 관찰이 요청된다.

1. 남녀평등권을 중심으로 본 북한여성 인권

북한은 건국 이래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며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부여를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이전인 1946년 7월 30일 이미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 제정된 바 있고, 북한 정권 수립 이후에는 사회주의 헌법을 비롯하여 여러 법규를

통해 여성의 권리를 명시해 왔다. 유사한 맥락에서 2010년 12월 22일 북한은 여성권리보장법을 채택하였다. 여성권리보장법은 제2조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다. 2002년 9월에는 여성차별철폐이행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하였다. 여성차별철폐이행에 대한 제1차 보고서에서 북한은 “여성차별은 오랜 역사를 통해 철폐되어 왔으며, 성 평등은 단순한 평등을 넘어 여성을 보다 중요시하는 개념으로 정책 및 입법에 반영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2차 보고서의 경우, 원래 2006년 3월 27일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그 시기가 미루어졌으며, 2016년 4월, 북한 당국은 2차, 3차, 4차 보고서를 통합한 통합보고서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였다.²⁾ 또한, 북한은 2001년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 당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언급한 제2조 (바)와 “당사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는 제9조 2항을 포함한 세 가지 조항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2015년 11월 23일 위 두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기도 했다.

북한이 최근 유엔에 제출한 통합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2009년 4월 9일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하면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조항을 첨가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남녀평등권 신장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여성권리보장법을 2010년 12월 22일에 채택한 것을 인용하면서, 북한 내 남녀평등에 대한 법규가 북한이 가입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통합보고서는 여성차별철폐와 여성인권 신장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여성동맹(여맹)의 역할 또한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여성인권 보장 그중에서도 특히 남녀평등에 대하여 법제도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증언하는 북한의 현실은 이러한 법제도와 상당한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통일연구원 면접조사에 응한 북한이탈주민의 75.4%가 북한여성의 지위가 여전히 ‘불평등’(매우 불평등의 경우, 16.9%)하다고 응답하였다. 2015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 U.N. Doc.,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Combined secon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2014,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5 April 2016).

54.5%가 북한 내 북한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불평등’하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북한 내 여성인권 및 남녀평등에 대한 법제도적 노력이 일정 부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 내 남녀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며 주민들이 느끼는 남녀 간 불평등 의식 또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녀평등 관련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면접에서는 대다수 응답자들이 북한 내에 여전히 남녀 간 불평등 현상이 존재하며,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증언하였다.³⁾

2. 여성의 사회참여 실태를 중심으로 본 북한여성 인권

북한은 2002년 9월에 제출한 여성차별철폐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적영역의 여성간부 비율을 증가시켰으며 여성재판관 비율이 10%, 외무성 직원의 15%가 여성”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의 보고서를 심의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정치·사법공직 분야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직위에 있는 여성들의 수가 적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올해 4월 북한이 제출한 통합보고서에서도 북한 당국은 각종 정부기관의 여성비율이 평균 20%를 상회하며, 최근 5~6%의 평균 증가율을 기록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서 내용과 달리 실제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그리 활발한 것 같지는 않다.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 등장시킨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의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선출된 여성 정의원은 4%(124명 중 5명)였고, 여성 후보위원은 3%(100명 중 3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북한은 최근의 통합보고서에서 2014년 이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서 20%가 넘는 여성들이 대의원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상징적 대표성만을 가지며, 실질적으로 국정을 감독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오히려 정치적·행정적 책임 및 권한을 가진 내각의 각료에 등용된 여성도 극소수에 불과하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당중앙위원회의 경우도 역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주도하는 주요 요직에는 역시 대부분 남성 중심적 문화가 지배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3) 남녀평등 및 여성인권 실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여성 다수 심층면접 결과 (2015년 6월~8월)

Ⅲ. 북한여성 인권실태: 가정과 북한여성의 인권

장마당 세대의 부상과 다양한 외부사조의 유입 등 북한사회는 여러 변화를 경험해 왔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 북한의 가정 내 북한여성의 인권실태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북한사회의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가정에서 남녀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은 여전히 전통적 가부장제도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하에서는 북한 내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변화 여부와 가정폭력의 실태와 관련된 북한여성의 인권을 다룬다.

1. 북한 가정 내 여성 역할과 여성의 인권

북한은 건국 초기에 사회주의 체제에 기초하여 남녀평등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표방하였다. 그러나 북한 가정의 경우 전통적 가부장 질서를 중심으로 ‘세대주’ 중심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는 사회적으로는 1970년대 김일성 유일체제와 부자세습체제 공고화와 맥을 같이 하며, 1990년에 제정·공포된 가족법으로 인해 전통적 가부장 질서가 더욱 공고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족법은 폭넓은 금혼의 범위, 부성추종의 원칙, 넓은 의미의 가족부양 등 전근대적인 가부장 질서를 법조문화 한 것이다. 이러한 가부장 문화는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조사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통일연구원 면접조사에 응한 북한이탈주민의 93.9%가 가사노동의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답하였으며, 응답자의 78.9%는 여성(아내)이 가족을 부양할 경우에도 가사노동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답하였다. 201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응답자의 93.5%가 가사노동의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답하였으며, 응답자의 83.3%는 여성(아내)이 가족을 부양할 경우에도 가사노동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답하였다.

물론, 이러한 풍조는 북한의 모든 가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예외적이지만, 일부 가정을 중심으로 남편들이 아내의 가사노동에 대해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는 증언들도 있고, 제도 혹은 사회구조적 측면보다는 개인적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가사노동에 임하는 남편들의 역할도 속속 보고되고 있다.⁴⁾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 상황과는 별개로 북한사회 전체의 사회구조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사회 내 시장화로 인한 여러 가지 변천요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과 현실에는 별로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북한사회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의 영향을 여실히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통일연구원 심층면접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남편의 위상과 관련, ‘실질적인 권위자’라고 답하였으며, 16.6%는 ‘형식적인 권위자’로 답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여성들의 경제활동 이후 지위 및 가치관에 있어 변화가 있다’는 응답도 45.8%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사회의 시장화로 인한 자유화 현상이 북한 가정 내 일정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주는 결과이긴 하지만, 여전히 가정 내 남편 및 아버지의 지위는 아내 및 어머니에 비해 보다 중심적 위치를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장마당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가 가정 내 여성의 지위 및 가치관에 일정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북한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뿌리 깊은 가부장 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북한 가정 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성의 인권

2005년 7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이 “가정폭력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다는 것을 우려”하고,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의 발생률과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를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동 위원회는 북한이 가정폭력에 관한 구체적인 법을 도입하고 여성들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이 범죄행위가 되도록 하며, 폭력의 피해여성들과 소녀들이 즉각적인 구제 및 보호수단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기소, 처벌받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통일연구원 면접조사에 응한 북한이탈주민의 81.2%(매우 흔함 27.4%)가 북한 가정 내 가정폭력이 ‘흔하다’고 답하였다. 북한사회 내 가정폭력 현상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가정폭력은 쉽

4) 북한 가정 내 여성인권 실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여성 다수 심층면접 결과 (2015년 6월~8월)

게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일이라고 한다. 특히,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복용한 남편들이 아내를 때리는 일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아내가 장사를 못하는 가정에서도 가정폭력이 흔한 편인데, 이는 아내가 여자구실(장사를 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못한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⁵⁾

북한 여성권리보장법 제46조는 “가정에서는 여성에 대한 온갖 형태의 폭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정폭력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가정폭력을 막기 위한 교육을 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국가는 개입하지 않으며, 이를 가정문제로 국한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증언하는 바, 북한 내 가정폭력이 흔하며, 이를 주민들이 신고하거나 당국이 예방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일들은 일상에서는 거의 벌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것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가정에서 여전히 가정폭력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례에서 발견되는 피해자인 여성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남성의 경우도,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가부장 문화에 익숙한 북한남성의 경우 가정에서의 폭력을 당연시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따라서, 북한 가정 내 만연한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IV. 결 론

북한은 건국 이래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며, 역사적으로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였고, 여성차별철폐협약에도 가입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변천해 온 북한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훨씬 적극적이고,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남성 중심의 정치제도 및 정치문화, 사회적 차별 등 북한여성이 극복해야

5) 북한이탈주민 000, 2015년 5월 31일 면접.

할 수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 북한여성의 가정에서의 삶의 모습도 많이 변해 왔다. 북한 내 성행하고 있는 장마당의 주요 행위자는 대부분 여성들이며 가정에서 가사노동 및 육아를 전담해야 할 주체도 여전히 여성들이다. 북한사회 내 뿌리 깊게 형성되어 온 가부장적 유교문화는 가정에서의 역할 분담과 현실에 바탕을 둔 여성지위 및 권리의 향상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이다. 가장 핵심적 사안은 북한 당국이 변화하는 사회 및 가정에서의 여성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에 상응하는 인식적·정책적인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북한여성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에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사례를 통해 살펴본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

Ⅰ 윤남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

I. 북한 여성관련 법령의 변천

북한이 해방 후 정권수립 초기에 공포한 각종 법령에서는 남녀평등의 원칙이 크게 부각되었다. 당시 한국사회는 유교적 전통이 강하여 삼종지도(三從之道)¹⁾라는 경구(警句)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대변해 주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이 시대에 획기적으로 남녀평등을 법제화한 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정치적 선전효과를 극대화하고,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끌어내어 새로운 체제 건설을 위한 사회운동에 동원하며, 생산현장에서 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함이었다.²⁾

1946년 6월 4일 공포된 「북조선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에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 근로·사무여성의 8시간 노동제, 산전산후 휴가, 수유시간 등을 보장하였다.³⁾ 같은 해 7월 30일 공포된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에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노동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 자유결혼 및 자유이혼의 권리, 재산권 및 토지상속권 등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아동양육비청구권, 일부다처제·인신매매·공창·사창·기생제도의 금지 등을 규정하였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계속된 한국전쟁으로 가정의 해체와 노동력의 극심한 부족에

- 1) 여성은,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식을 따라야 한다는 도리로서 《예기》의 의례(儀禮)에 나오는 말이다.
- 2) 안태윤, “한 엘리트 북한여성의 생애사로 본 분단체제 하의 여성의 삶과 가족의 생존전략”, 여성과 역사 22(2015. 6.), 241면.
- 3) 황의정·최대석, “북한의 여성관련 법제정을 통해 본 여성의 법적 지위의 변화 전망”, 동북아법연구(제9권 제2호), 6면.

직면하여 이혼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정하였으니 1956년 협의이혼제도를 폐지하고 재판상 이혼만 허용하게 되었다. 1957년 7월 채택된 「인민경제 각 부문에 여성들을 더욱 광범히 인입할데 대하여」라는 내각명령은 전업주부들을 생산노동에 더 많이 동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⁴⁾ 1960년대와 1970년대 탁아소와 유치원이 대폭 확충되었는데 이것 역시 여성노동력은 생산활동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다. 1976년 제정된 어린이보육교양법은 그간의 탁아정책을 포괄적으로 정비한 법률로서 모성의 노동권 보호, 산전산후 휴가, 수유시간 보장, 다자녀를 둔 여성에 대한 특별혜택 등을 정하고 있다.⁵⁾ 1978년에는 모성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 임신여성노동자의 야간노동금지 등을 규정한 사회주의노동법이 제정되었다.⁶⁾

II. 북한의 현행 법제상 여성의 지위와 권리

북한헌법은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7조). 또한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남녀의 정치적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제66조).

2010. 12. 22. 공포된 「녀성권리보장법」은 여성의 지위와 권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 법 제2장(사회정치적 권리)에서는 기관이나 단체가 여성간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등용할 의무(제15조), 사법기관이 여성에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인격을 존중하고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것(제1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에서는 입학, 진학, 졸업 후 직장 배치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을 규

4) 황의정·최대석, 7면.

5) 황의정·최대석, 8면.

6) Ibid.

정하면서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함에 있어 특별한 전문분야를 제외하고 성별을 이유로 여성을 모집하지 않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19조). 제4장(로동의 권리)에서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는 채용에 있어서 성별, 결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을 차별하지 말 것(제28조), 여성에게 남성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것과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여성의 근로시간은 6시간이며 생활비 전액을 지급한다는 것(제31조), 산전 30일, 산후 60일의 출산휴가(제3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인신 및 재산적 권리)에서는 폭력 또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여성의 신체에 피해를 가하거나 수색하는 행위(제37조)와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다(제40조). 또한 재산상속에서의 남녀평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3조). 제6장(결혼, 가정의 권리)에서는 여성의 결혼자유권(제45조), 가정폭력의 금지(제46조), 남편은 아내가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제47조),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48조), 여성의 출산의 자유와 국가는 다자녀의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제5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Ⅲ. 북한 여성의 인권 실태

북한의 ‘법학자, 교사, 변호사, 인권전문가, 법집행일꾼’ 등으로 구성된 ‘조선인권연구협회’는 2014년 9월 13일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정권의 인권백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북한은 자유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민주주의 복지국가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보고서에는 자유세계의 인권개념과는 전혀 다른 ‘북한식 인권’의 개념이 소개되어 있다. 즉 “현재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기본인권의 유래를 1789년 8월 26일 프랑스에서 채택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과 1776년 7월 4일 미국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에서 찾고 있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 미국 《독립선언》은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에 대한 권리를 기본인권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선언들에서 주장된 《기본인권》들은 부르조아계급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권을 확인, 고착시킨 것으로서 결코 인간의 보편적인 기본권이 아니다.”라는 것이

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주적 권리로 파악하는 한편 이 권리는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집단과 국가에 귀속된다고 한다. 결국 자유세계에서 기본적인 인권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은 북한에서는 공식적·명시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입법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허울을 만들어놓고 현실에 있어서는 개인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후진국형 독재와 북한정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북한정권은 인권의 개념 자체를 왜곡하고 있고, 북한주민 전체가 총체적으로 인권탄압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인권을 따로 논하는 의미는 크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북한의 인권관련 법은 주로 체제선전용이거나 유엔 등 국제사회의 압력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제정된 것들이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은 북한에서 생활할 당시에는 법의 내용을 알 수 없고 이를 주민들에게 알려주거나 교육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북한의 인권보장 법규가 얼마나 허구인가는 김일성대학 의대를 졸업하고 평양에서 의사로 일하다가 탈북한 한 여성의 경험담에 잘 나타나 있다.⁷⁾ 1936년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태어난 그는 1970년대 평양에서 같은 김일성대학 의대를 졸업한 남편과 사이에 1남 4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6촌은 부수상을 지내다가 1956년 반당종파분자로 몰려 숙청당하였다. 그러나 그와 면식조차 없는 이 여성과 가족은 그 후 아무 일 없이 살아왔는데, 20년 이상 지난 1976년 10월 3일 갑자기 평양에서 함경북도 무산으로 소개(추방)명령을 받은 것이다. 이들 부부는 추방된 곳에서 의사로 일한 것이 아니라 농장에 소속되어 농업노동자로 살아가야 했다. 북한정권은 1976년 8월 판문점에서 ‘도끼만행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평양에는 성분이 깨끗한 사람만 거주하게 한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반당종파분자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추방한 것이다. 평양에서의 추방명령은 주민들 사이에 그 자체로 사형선고로 받아들여지는데, 추방에 그치지 않고 직업까지 박탈한 것이다.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에 혁명적으로 여성의 권익을 확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였지만 북한사회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전통적 여성상이 강조되면서 후퇴하였다. 이 시기에 수령체제를 강화하면서 공장의 성별분업을 제도화하였고, 가정에서는 남성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국가와 가족을 일체화하고 유교적 부덕(婦德)인 삼종지

7) 안태윤, 249면.

도를 체현한 이상적 여성상으로 김일성의 어머니 김반석과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을 부각시키면서 그의 행적을 따를 것을 주민들에게 요구하였다. 가족정책의 목표는 사회 전체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위하여 가족을 혁명화하는 것이었다.⁸⁾ 1990년대에는 ‘사회주의 대가정론’이 가족관계에 관한 지도이념으로 등장했다. 사회는 수령과 당, 대중으로 구성되어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운명공동체로서, 가족관계에서 가장(家長)이 중심이듯이 대가정(大家庭)으로서의 사회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수령이 가장으로서 정점(頂点)에 있다는 것이다.⁹⁾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붕괴되고 2백만 명이 아사(餓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동유럽과 소련의 몰락으로 외국과의 경제교류가 대폭 축소된 것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경제정책의 실패, 극심한 가뭄과 홍수 등 내부적 요인이 일시에 결합되어 나타난 대재앙이었다. 북한정권이 주민들에게 식량배급을 할 수 없게 되자 정치적 통제력이 상실되고, 장마당과 같은 비공식 경제활동이 확산되면서 남성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약화되고 대신 여성에게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무가 부가되었다.¹⁰⁾

IV. 탈북자의 증언에 나타는 북한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1.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에 탈북자로부터 신고된 인권침해 사례 중의 하나이다.

1. 신고 개요

- 가. 접수일자 : 2016.
- 나. 신고인 : 20대 여성
- 다. 피해자 : 신고인
- 라. 가해자 : 브로커(북한), 신고인의 남편(중국)
- 마. 신고요지 : 인신매매 및 강제결혼 등

8) 안태윤, 241면.

9) Ibid.

10) 안태윤, 242면.

2. 신고내용

가. 인신매매 및 강제결혼

- (1) 신고인은 양강도 혜산시에 살았는데 2006년 겨울에서 봄 사이 중국에서 장사하며 알게 된 언니의 지인(아는 삼촌이라고 했음)이 중국에서 장사를 하게 해준다고 해서 중국 00에 가게 되었음. 그런데 중국에 가자 장사를 시켜 준 것이 아니라 2만 위안을 받고 중국인 남자에게 팔아넘겼음.
- (2) 신고인의 중국인 남편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었는데 2015년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 약 10년간 살면서 아이도 낳았음.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호구가 없어서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였고 단속되면 북한으로 보내질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생활 하였음.

나. 교육기회

- (1) 신고인은 북한에서 소학교, 중학교 다닐 때 나무, 토끼가죽, 고사리 등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내라고 하는 것이 많아서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결석을 한 일이 있음.
- (2) 식구가 많다보니 학교에서 내라고 하는 것을 다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지 않으면 석보에 이름이 적히고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불러서 언제까지 가져올 것인지 계속 물어보았음. 이런 상황이 싫어서 1주일에서 열흘 정도씩 학교를 안 나간 적이 있음.

다. 공개처형 목격 경험

- (1) 2000년 경 양강도 혜산시 광장에서 공개처형을 목격한 경험이 있음. 전주대 같은 나무에 사람을 묶고 총살하였음.
- (2) 공개처형 대상은 40대 중반 2명이었음. 한 명은 소를 훔친 것 때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전기선(고압선)을 자른 것 때문이라고 들었음.

2. 본 발제자는 2016년 5월 1일 북한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탈북자 5명을 면담하였다. 그 중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 면담자 손○○(1966. 6. 30. 생)

◇ 경력

- 함경북도 회령 출신, 북한 석탄공업대학 졸업, 보안서 근무 경력
- 1998년 탈북했다가 1999년 중국에서 체포되어 복송되었으나 그 해 7월 다시 탈북
- 2007년 중국에서 체포되어 복송되었으나 그 해 11월 다시 탈북하여 2008년 3월 한국 도착

◇ 인권침해 내용

- 1994년 이후에는 식량배급이 완전히 끊김. 배급표는 계속 주지만 현물이 지급되지 않는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관청에서 오래된 배급표에 대하여는 무효를 선언함. 진술자는 역 광장이나 거리에서 굶어죽은 사람은 많이 목격하였음

- 성분이 좋은 학생을 미리 뽑아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성적에 따라 대학 진학시킴. 이 과정에서 남녀차별은 없는 것으로 안다. 성적은 좋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도 많은데, 이 경우 빈자리를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당간부 자제들이 뇌물을 주고 채우게 됨
- 당원이 되어야 승진이 되는데, 직장에서 상급자가 노동당 입당을 시켜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부하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예가 많은바, 이 경우 부하 여성은 일반적으로 기꺼이 이를 받아들임. 상사와 부하 사이의 간통은 통상 처벌하지 않으나 소문이 나면 해당 여성을 비하하는 경향이 있음
-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성매매가 유행하였는데, 이는 마지막 생존수단이기도 하고 관에서도 식량배급을 제대로 못하니 철저히 단속하지 않기 때문임. 생계를 위하여 남편이 부인의 성매매를 묵인하거나 중용하기도 함. 성매매 장소는 주로 기차역 주변이고, 성매매의 주 고객은 군인들인데, 이들은 출장을 나올 때 현금을 지참하기 때문임
- 직장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승진이 어려움. 여성이 업적을 내어도 승진 대상인 남성에게 그 공을 돌리는 경우가 많음
- 정년은 남성 60세, 여성 55세이지만 여성은 결혼과 함께 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임(탁아소 시설이 부족하므로 육아를 위하여 퇴직할 수밖에 없고, 또한 당연히 퇴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탈북을 시도하거나 중국에서 체포되어 송환되어 온 사람을 보위부 등에서 취조할 때는 대상자의 옷을 완전히 벗기고 소위 ‘펌프질’을 100회 정도 시킴(생리하는 여성은 50회)
 - 이 경우 조사자는 주로 남성임
 - 펌프질을 시키는 이유: 탈북자 또는 이를 시도하는 자는 수중에 현금을 가지고 있게 마련인데, 잡히면 지폐를 비닐에 싸서 먹거나 여성의 성기 속에 감추게 됨. 이 경우 펌프질을 시키면 감춘 돈이 흘러나오게 됨. 체포된 자가 화장실에 가는 경우 대변을 보자마자 바로 나오게 하고 그 대변을 파헤쳐서 현금이 있으면 이를 수거함. 이러한 방법으로 강탈한 현금은 보안서나 보위부 직원의 개인적 수입이 됨. 이들의 수입은 개인 당 1일 인민폐 300-400 위안 정도라고 들었음
- 구금되어 있는 동안 함께 수감되어 있던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는 다른 여성 20여 명과 함께 취조를 받았고, 해당 취조자는 여성들로 하여금 펌프질을 시키는 대신 다리를 벌리고 뒤로 기대어 앉게 한 다음 차례대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그 속에 현금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함
 - 그 여성은 다른 여성이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성병에 감염되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수는 손도 씻지 않은 채 20여 명의 여성의 성기에 차례대로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이에 자신은 성병에 감염될지 몰라 두려워했다고 함
 - 간수는 이러한 방법으로 몸수색을 끝낸 다음 ‘너희들 중에 처녀는 하나도 없다’고 모욕을 주었다고 함
 - 북한에서 구류장에 들어가면 관원이 지금부터 당신은 조선민주공화국 국민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부터 이름이 없이 번호로 호칭하고 노인이나 여성에게도 반말과 상욕을 하면서 조사를 함



북한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Ⅰ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

1. 북한정권을 위한 여성의 정치도구화

북한에서 여성의 삶은 해방직후부터 정치적으로 다루어 졌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김일성은 북한여성들에 대해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봉건적 질곡에서 해방시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전제아래 축첩제도와 강제혼, 매매혼 등 봉건적인 가족제도와 혼인관계 등을 폐지하고 여성들에게도 남성과 똑 같이 선거권을 부여하고 토지 개혁을 통해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토지를 부여하는 등 의 조치를 실시했다.

김일성은 1945년 11월 18일 북조선민주여성동맹(후에 조선민주여성동맹)을 창설하여 여성을 정치조직화 하였으며 1946년 6월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등을 공포하면서 여성들에게도 8시간 노동제와 사회보험제, 동일노동임금, 유급휴가, 노동 안전 및 위생조건의 개선, 산전산후휴가 77일, 유아수유시간 1시간 등 모성보호조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해방 된지 1년도 안되어 1946년 7월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의 발표를 통해 여성의 사회정치적 지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며 인국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정치적입지가 강화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이러한 북한의 조치들은 여성을 내세운 북한정권수립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반면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가부장적인 지위의 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일성은 정권수립 이후에도 사회주의화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노동력 확보의 차원에서 여성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함으로써, 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세웠다. 북한은 그러한 차원에서 사회주의 헌법과 어린이 보육을 위한 법령과 산전산후 휴가제, 등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전국 어머니대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탁아소,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을 장려하였으며 여성들을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출하고 여성간부들을 발굴하기도 하였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은 주로 식품가공, 방직, 피복공업 등의 경공업분야와 식당, 상점 등 편의 봉사부문과 교육, 문화, 보건 등의 분야에 치우쳐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가사 일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밥 공장을 비롯한 편의 봉사시설을 확대하고 가공식품 생산을 장려하였으나 실제로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여성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기도 하였다.

2. 남존여비와 가부장적 여성상 “울트라 슈퍼우먼”

북한은 여성의 지위를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함께 밀고 나가는 혁명의 동력”이라고 규정하고 사회적, 정치, 경제적 생활에서 남자와 꼭 같은 권리를 보장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전국어머니대회”, “어머니교실” 등을 개설하고 여성에 대한 교육 교양을 강화하였다. 북한은 여성들에게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담당할 혁명의 동력으로써의 사회적·정치적 역할과 함께 가정혁명화와 가사부담 등 여성의 역할을 가정과 자녀교육, 남성들의 뒷바라지와 같은 가부장적인 전통적 여성상을 강요하였으며 그러한 모델로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을 내세웠으며 강반석을 조선의 어머니로 떠받들며 우상화하기도 했다. 김일성은 여러 기회를 통해 강반석의 모성애와 자기희생, 헌신적인 내조, 강인한 인내 등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하면서 여성의 모성애와 남성에 대한 헌신적 내조, 가사에 대한 부담을 강요하기도 했다. 김일성에 뒤이어 김정일 또한 자신의 어머니이자 김일성의 첫 번

째 아내였던 김정숙에 대해 김일성의 혁명동지, 투사로써의 여성상과 아내로서의 여성상을 강조하면서 강반석에 이어 북한여성들이 따라 배워야 할 모델로 추켜세웠다. 김정일은 김일성보다 한수 더 떠서 김정숙의 생일인 12.24일을 국가적인 행사일로 제정하고 모든 기관, 기업소와 단위들에서 충성의 노래모임과 학습경연 등을 개최하여 공산주의적 투사로써의 여성상과 함께 전형적인 가부장제도의 여성상으로써 남편과 자녀를 위해 끝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가정살림과 경제활동, 정치활동 등 어떤 일도 능수능란하게 해내는 울트라 수퍼 여성이 되도록 장려하였다.

물론 북한은 1당 독재국가이고 민간의 어떤 정치적 활동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당에 일방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 진행되며 따라서 여성이 최고인민회의,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이나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에 간부로 등용되는 것은 전적으로 당과 수령의 결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여성에 대한 간부등용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출신성분과 남편이나 가족의 권력배경이었으며 그러한 결과 북한에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식품 및 생필품의 유통과 배급, 의료 및 편의 봉사분야는 간부들 부인들의 몫이 되었고 이것은 정경유착의 중요한 고리가 되어 배급제도에 의한 부족경제체제에서 간부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지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북한은 1980년대에 간부들의 부인들을 모두 상업 및 편의 봉사분야에서 내보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간부부인들은 또다시 본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로 인해 부정축재를 하게 되고 호의호식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북한여성들로 하여금 출신성분이 좋고 출세가 가능한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이 대학을 10개 나오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고 그러한 의식은 조혼을 조장하기도 하고 남편공대 신드롬을 만들어 내었다. 특히 북한은 배급제국가로써 일하는 여성과 일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배급제도는 엄청난 차별이 존재했는데, 일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식량배급이 남성과 같지만 일하지 않고 있는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3세 유아와 같은 양의 배급인 1일 300그램을 배급하였고 모든 생필품에 대한 배급에서 남편을 통해서만 배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의 가치를 더욱더 남성 의존적으로 조장하기도 했다.

북한에서는 가구당 세대주가 정해지고 세대주는 무조건 나가 일을 해야 하는데 만일 사별을 당했거나 이혼을 당했거나, 또는 남편이 정치범이나 여타의 범죄로 인해 교화소에 가게 되는 경우에는 여성의 처지에 상관없이 직장생활을 해야 하고 남편이 일하던 회사나 또는 농촌이나 탄광, 광산, 임산, 건설업 등 중노동 분야에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찌면 여성의 존재는 남편의 지위에 따라 운명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여성의 삶은 상상조차 할수 없다.

북한에서 탄광, 광산, 농촌, 임산, 건설 등 중노동분야에서 일하는 미혼여성들의 경우에는 결혼 외에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의 경우 일찍 결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전업주부로서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여성들은 특별한 재능도 없고 배급을 300그램만 받기 때문에 엄청난 가사의 부담을 감당하고 있지만 남편이나 가족들로부터 엄청난 구박을 당하기도 한다.

북한도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산전·산후 유급 휴가제를 도입하고 탁아소, 유치원운영 등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이 결혼하여 임신과 출산 육아의 부담을 안게 되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생산직을 제외한 인기 있는 직종들에서는 대부분 결혼과 동시에 직장생활을 그만두도록 되어있으며 결혼한 여성은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북한이 정상적인 사회주의체제로 운영될 때에는 당원이 되어야만 간부등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 입대를 하여 10년간 군대생활을 하는 남자들은 군 생활 기간에 입당이 용이하고 또 간부등용의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군복무이기 때문에 여성에 비해 간부등용에 훨씬 유리하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있는 여성에 비해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조건도 훨씬 유리하다. 특히 북한은 남한과 달리 출산이나, 육아, 가사부담 등을 타인에게 절대로 맡길 수가 없고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할 뿐 아니라 가사조건과 출산, 육아조건 등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간부등용에서 남성에 비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김일성은 1970년대에 실시된 인민경제 6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음식물가공업과 가전제품의 생산 등의 과제를 제시 했지만 현재까지도 북한에서는 자체로 가전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 장사군들을 통해 북한의 장마당에 반입된 쿠쿠밥솥이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으나 전기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형편이다.

조선노동당에 입당하는 것이 간부등용과 좋은 일자리를 얻는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군에 자원하거나 돌격대와 같은 힘든 노동을 하는 곳에 자원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일하면서 성상납이나 성폭행, 성추행 같은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도 그에 대한 보호는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남한의 여성정치인이나 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나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 등은 남한과 달리 사회적인 명예직에 불과하며 실제적인 역할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실제로 권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기관이나 공장, 기업소의 행정 간부나 당 간부로 활동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는 북한의 여성간부가 남성에 비해 월등하게 적고 실제로 농촌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가정살림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훨씬 더 많은 일과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남성이 10년 이상 군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건설노동과 탄광, 광산, 임산, 농업 등 중노동분야에는 미혼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간부나 관리직은 남성들이 차지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남한에서 북한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실을 알지 못한 채 북한이선전하는 자료에만 의존하다보니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숫자만을 기준으로 북한의 여성지위향상을 논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나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모두 선출직의 형식을 띤 임명직이기 때문에 명예만 있을뿐 실질적인 역할은 전무하며 실제로 자신의 기본적인 직업을 그대로 가지고 수행한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 대한 기여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3. 배급제붕괴로 인한 북한여성의 경제적 부담 증가

배급제시대에 직장여성들은 1일 배급량도 700g으로 남자와 동등하고 특히 여성의 직업이 생활에 보탬이 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에는 남자들 앞에서도 큰소리를 치기도 하고 세도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직장여성에 비해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전업주부들의 경우에는 1일 배급량도 300g밖에 안되는데다가 남편의 직업과 남편의 능력에 의해서만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여성의 가사노동 같은 것은 전혀 인정받지 못했고 오히려 전업주부 여성들은 식량배급도 아주 적게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도로뒹기, 집짓기, 농촌동원 등 다양한 사회노동에 강제로 동원되어 무보수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그러다가 국가가 배급을 중단하고 남편들이 직장에 나가 일을 해도 월급을 받아오지 못하게 되자 가계의 생계는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 되었고 여성들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다양한 장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도 배급과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이 가장 바보 취급을 받게 되었고 항간에는 “1등 머저리 직장에 다니는 여자, 2등 머저리 돼지 기르는 여자, 3등 머저리 장사하는 여자” 라는 말이 떠돌게 되었고 전업주부들은 돼지나 개를 사다 길러서 팔거나 수매를 시켜 식량을 마련하고 콩을 사서 두부를 만들어 팔았으며, 식량을 사서 음식을 만들어서 장마당에 내다 팔았다.

밀천이 있고 뒤 배경이 든든한 여성들은 간부들을 끼고 각종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특히 국경연선에서는 도강증을 뒷돈을 주고 떼고 중국방문을 해 중국 상품들을 차떼기로 사와서 북한시장에 내다 팔아 엄청난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국경지역에 통행증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뒷돈을 주고 통행증을 발급받아 중국 상품을 내륙지대나 청진, 함흥, 평양 등 여러 지역을 유통시켜 돈을 벌었다. 이러한 장사를 하는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시간이었기 때문에 직장여성들에 비해서는 전업주부로 있던 여성들이 훨씬 유리하게 되었고 전업주부로 있던 여성들 가운데 통 크게 장사를 하면서 폭리를 취해 벼락부자가 된 여성들이 나타나면서 남녀의 역할분담이 바뀌게 되었다.

특히 북한은 남성의 경우 특히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아무리 배급을 주지 않고 월급이 나오지 않아도 무조건 출근을 해야 하고 만일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에 식량휴가를 내고 그 기간에 따르는 돈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 비해 전업주부들의 입장이 훨씬 유리하게 되었다. 북한 당국에서 배급이 중단되고 장사로 생계를 유지 하게 되자 여성들의 활동무대는 훨씬 넓어졌고 남편들은 여성들을 대신해서 집을 지키거나 살림을 맡아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며 일부 남성들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벌어들여주는 돈으로 술을 마시고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기 때문에 가정불화가 심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여성들이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먼거리 장사를 가거나 장사를 위해 중국으로 도강을 하기도 하고 도강증을 내고 중국 방문을 하기도 해 가정파괴가 심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가부장적인 북한사회에서 남편들의 지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남편은 불편”이라고 부르고 남편들의 지위를 “낮전등”, “자물쇠”, 등으로 비하해 부르고 이혼율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 “1등 머저리 남에게 돈을 꾸어주는 사람, 2등 머저리 남에게 꾸었던 돈을 갚아주는 사람, 3등 머저리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결혼하는 여자”라고 부를 정도였다.

어쩌면 남녀평등권을 내세우고 여성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담당하는 혁명의 동력으로 치켜세우면서도 체제선전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대우만 해주던 배급제 시절보다 배급제가 붕괴되고 가정의 생계부담이 여성에게로 전가되면서 오히려 여성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지게 되었고 여성들은 남성 앞에서 더욱 당당해지게 되었던 것 같다.

사실 북한은 이혼에 대해 법적으로 강하게 통제를 했다. 1956년 3월까지도 북한에서도 합의 이혼이 가능했지만 합의 이혼제도로 인한 이혼사례의 빈발로 “내각결정 제24호”는 합의 이혼제도를 폐지하고 재판상의 이혼만을 허용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의 가족법은 “제 20조 2항, 리혼은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배급 제도를 실시하면서 식량배급과 거주지이전의 자유제한 때문에 이혼이나 별거가 상당히 어려웠지만 배급제도가 붕괴되고 장사활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요즘은 판사에게 뇌물만 제공

하면 아주 쉽게 이혼을 할 수 있고 또한 이혼수속을 하지 않더라도 집도 구입할 수 있고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제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별거해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 이혼률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한다.

RFA에 따르면 이혼을 허가하는 판사에게 100달러만 주면 아주 쉽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최근 이혼하는 부부들이 급증하고 있고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30~40달러의 뇌물만 제공해도 이혼이 가능할 정도인데 재판소 판사는 뇌물 액수가 많은 쪽 편을 들어 이혼 가부를 판결하는 게 보통”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의 평안북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혼 풍속도를 전하기도 했는데, “딸 시집보내고 나서 장마당에 가서 두부 한 모 사서 (집에) 왔더니 그 사이 시집간 딸이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는 말이 나 돌만큼 날이 갈수록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면서 “배급제시절보다 장사가 성행하면서 남편에 대한 여성들의 자기주장이 강해진 것도 이혼이 늘어난 요인”이라는 것이다.

4. 여성탈북자의 증가는 북한여성인권실상을 보여주는 것

북한에서 배급제가 붕괴되고 지하시장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고, 여성들의 개인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해 배급제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이동을 요구했다. 그리고 너무도 좁은 북한시장에서, 늘 네 것 사고, 내 것 팔고 식의 장사방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장사활동의 어려움으로 작용했고 장사를 처음 시작 할 때보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시장은 점점 잠식되어 북한 내에서는 벌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돈을 많이 만지는 여성들일수록 중국과의 관계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는 과정에 많은 여성들이 중국으로 탈북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결과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3만명의 탈북자 중 80%정도가 여성일 정도로 많은 북한여성들이 탈북하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기껏 해서 4~5명 정도였고 그중 여성은 전무하다시피 했으나 북한의 배급제가 붕괴되고 여성들의 장사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탈북자의 수급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0년 경 부터는 1년에 1명이상이 입국하게 되었으며 그중에서 70%이상이 여성으로 증가하였고 현재는 입국하는 탈북민의 80%이상이 여성이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부모형제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탈북한 북한여성들은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정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각종 방법으로 돈을 모아 가족을 구출해오고 북한가족들에게 송금을 해주고 있다. 그러한 결과 예전에는 기피대상이던 탈북자 가족들이 요즘은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상황이 되었고 오히려 탈북자들이 있는 집과 혼사를 맺고 싶어 하거나 또는 관계를 좋게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까지 생겨날 정도라고 한다.

북한에서 배급제가 붕괴된 후 북한여성들은 가중된 가족의 생계에 대한 책임과 부담으로 인해 거의 반 강제적으로 장사활동에 뛰어들게 되었고, 결국은 식량구입과 돈벌이를 위해 중국으로 월경해 중국에서 돈벌이를 하거나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었고, 일부 여성들은 강제복송이나 공개처형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북한여성 인권 실태

▮ Phil Robertson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

탈북 여성의 정신건강문제

Ⅰ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장)

북한은 ①정신분열병(schizophrenia)과 같은 중증정신증(severe psychosis)을 치료해야 할 병으로 취급하지 않고 49호라고 분류하여 정신병원에 수용하여 일반인과 격리시키고 있다. 그 외 ②우울증과 같은 다양한 정신건강문제는 ‘심장신경증’등으로 부르며 정신과가 아닌 내과에서 진료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진료 과 및 진단체계가 우리와 달라 북한의 정신건강문제에 제대로 된 실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국가적으로 개인의 ③자살을 일종의 반역죄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제 자살을 하더라도 그렇게 보고할 수가 없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자살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 여성의 정신 건강을 추정해 보면, 북한사회는 남성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나 정신건강에 대한 배려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①가정 폭력을 일종의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집안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기 때문에 맞아 죽기 전에는 사회가 개입하지 않는다. 또한 ②이혼도 상호 합의가 안 되는 경우 공정한 판결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일방적으로 남편의 의견을 물어 따르는 것이 실상이다. 그래서 특히 알코올중독자나 성격과탄자와 결혼한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심한 폭력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안타깝게도 그냥 맞고 살거나, 죽거나, 도망가는 수밖에 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여 정신건강 영역에는 신경을 쓸 여유가 없고 질병에 걸려도 무상의료체계 붕괴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존 여부가 더 큰 문제로 당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③탈북 여성들을 탈북 이후 겪은 충격적 경험과 고통에 압도되어 일부 여성은 정신건강문제를 북한에 있을 때부터 갖고 있었지

만, 대부분 여성이 탈북 이후 증상이 발현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호소하고 있다.

탈북 여성들은 남한으로 직행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중국으로 넘어간 경우를 제외하면, 탈북 시 브로커를 통해 팔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10대 후반의 어린 여성들은 그렇게 될 것을 모르고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만 믿고 따라갔다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인신매매**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들은 주로 한족 혹은 조선족 집안으로 팔려가 같이 살면서 아이를 낳아주고 집안일, 농사일을 돕거나 공장 등에서 일을 하는데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겪은 어려움**이 특히 문제가 된다. 경찰에 잡힐까봐 숨어살면서 공포에 떨거나 도망 다니느라 부상을 입는 경우가 빈번하고 가끔 실제 복송되어 맞고 고문당하고 질병에 걸려 거의 죽을 뻔 경험을 한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범죄 피해를 입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대우, 폭력, 학대**를 받아도 어디 하소연할 수가 없고 일부는 마약을 동반한 성폭행, 강간 피해를 입는다.

탈북여성의 충격적 경험의 후유증은 탈북 여성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엿볼 수 있는데, ①**밤마다 악몽을 꾸다든지**, ②**깜짝깜짝 놀람**, ③**사람에 대한 불신감**, ④**대인관계 회피**, ⑤**분노 조절의 어려움**, ⑥**괴롭혔던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⑦**있었던 일이 기억이 안 나가거나 어떤 기억은 생생하게 자꾸 떠올라 괴로움**, ⑧**만성 통증 및 그로 인한 진통제 등 약물 오남용**, ⑨**자살시도** 등의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외상후스트레스 증상**(posttraumatic stress symptoms)은 단일 혹은 복합적 트라우마 요인에 의해 발생하여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데 일부는 만성적 경과를 밟게 되어 **삶의 질이나 일상생활 및 직장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고 **치료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더욱 부정적 예후**를 갖게 된다.

통일부 자료의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¹⁾에 의하면 여성이 71%를 차지하고 있고(2016년 3월말 기준), 국립중앙의료원 진료 실적²⁾을 살펴보면 여성 진료 건수의 비율이 외래 진료 건수의 경우 77.7%, 입원 진료 건수의 73.3%를 이루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의료 지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는 매년 시행하는 실태조사³⁾에서 우선적으로 받고 싶은 지원 중 **의료지원에 대한 수요가 경제적 지원 수요(37.8%)를 추월한 39.0%로 가장 높게** 났다는 결과에서 알 수 있다.

1) Unikorea.go.kr [homepage on the Internet], Seoul: Ministry of Unification [cited 2016 Apr 4]. Available from: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2) 국립중앙의료원 내부 자료

3) 2014 Survey for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Seoul: Korea Hana Foundation; 2014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 중 하나인 국립중앙의료원 입원 실적으로 살펴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별 순위가 전체 진료과 31개과 대비 상위 5위안에 포함되어 있어 그들이 신체 건강 뿐 아니라 **정신 건강 상태도 열악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의 진단 현황을 분석해보면 우울장애(depressive disorder), 불안장애(anxiety disorder),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양극성정동장애(bipolar disorder), 신체형장애(somatoform disorders) 순이고, 진료 초진 시 주요 문제(chief problem)은 두통(headache), 불면(insomnia), 우울(depressive mood), 어지러움(dizziness), 건망증(amanesia)의 순으로 나타난다.

탈북 여성은 돌보아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도 많은데 북한에서 낳은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 중국에서 낳은 다문화 자녀를 데리고 온 경우, 남한에 와서 낳은 자녀를 돌보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그들은 탈북 및 남한 입국 과정에서 가족 해체, 이별, 상실의 경험으로 인한 ①**자녀들과의 애착관계문제**, 정식 혼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비롯된 ②**결혼 상태의 불안정성** 및 한부모 가정, 본인의 정신건강 문제 및 양육 문화의 차이로 인한 ③**부정적 자녀 양육**,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인한 ④**대리 양육자의 부재** 및 ⑤**자녀의 정체성 문제**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열심히 배우고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맞추어져 있고,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탈북 여성에 대한 고려는 별로 되어 있지 않아 특히 영유아를 둔 탈북 모는 그들이 극복해야 할 문제에 일반 탈북민이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대인관계문제 외에도 육아의 어려움이 가중되어있다.

결론적으로 북한 여성은 재북 기간 동안 남성 위주의 가족관 속에서 가정 폭력에 노출되어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정신질환을 치료가 아닌 수용의 대상으로 보는 질병관으로 인해 및 정신건강문제가 신체 증상화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탈북 이후 과정에서 겪은 충격적 사건 경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한 사람에 대한 불신감, 일상생활 기능 저하, 통증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등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그들에 대한 **꾸준하고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데, 이질적 의료체계를 가진 북한에서 온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대한 편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돌보아야 할 자녀를 동반한 탈북 여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을 통하여 그들의 자녀가 잘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6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좌장 : 신혜수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

2세션 : 여성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유엔인권메커니즘

- ① 유엔의 여성 인권보호 메커니즘
안윤교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인권담당관)
- ② 북한 UPR 심사 절차 활용 방안과 사례
Michelle Kissenkoetter (국제인권연맹 아시아국장)
- ③ 국내 NGO의 유엔인권메커니즘 활용 사례와 제언
Joanna Hosaniak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
- ④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북한여성인권
백범석 (경희대학교 교수)
- ⑤ 고문방지협약과 탈북 여성 인권 보호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유엔의 여성 인권보호 메커니즘

Ⅰ 안윤교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인권담당관)

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의 여성인권에 관한 주요 유엔 문서

유엔 결의안

-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A/RES/62/167 - 2008년 2월 28일
-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A/RES/63/190 - 2009년 2월 24일
-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A/RES/64/175 - 2010년 3월 26일
-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A/RES/65/225 - 2011년 3월 18일
-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A/RES/66/174 - 2012년 3월 29일
-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A/RES/67/181 - 2013년 3월 20일
-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결의안 A/HRC/RES/25/25 - 2014년 3월 28일
-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A/RES/69/188 - 2014sus 12월 18일
-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결의안 A/HRC/RES/28/22 - 2015년 4월 8일
-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결의안 A/HRC/RES/31/18 - 2016년 4월 8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요약 보고서 (A/HRC/25/63) - 2014년 2월 7일
-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상세결과 보고서 (A/HRC/25/CRP.1) - 2014년 2월 7일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A/70/393), 2015
-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A/69/639), 2014
-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A/68/392), 2013
-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A/67/362), 2012
-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A/66/343), 2011
-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A/65/391), 2010
-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A/63/332), 2008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

- 북한 인권상황 모니터링 및 기록을 강화하기 위해 수립된 현장기반 조직을 포함한 역할 및 업적에 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A/HRC/31/38) - 2016년 2월 1일

유엔 특별절차 보고서

- 북한 인권상황 특별 보고관 보고서 (E/CN.4/2005/34) - 2005년 1월 10일
- 북한 인권상황 특별 보고관 보고서 (A/60/306) - 2005년 8월 29일
- 북한 인권상황 특별 보고관 보고서 (E/CN.4/2006/35) - 2006년 1월 23일
- 북한 인권상황 특별 보고관 보고서 (A/61/349) - 2006년 9월 15일
- 북한 인권상황 특별 보고관 보고서 (A/HRC/4/15) - 2007년 2월 7일
- 북한 인권상황 특별 보고관 보고서 (A/62/264) - 2007년 8월 15일
- 북한 인권상황 특별 보고관 보고서 (A/HRC/7/20) - 2008년 2월 15일
- 북한 인권상황 특별 보고관 보고서 (A/63/322) - 2008년 8월 22일
- 북한 인권상황 특별 보고관 보고서 (A/HRC/10/18) - 2009년 2월 24일
- 북한 인권상황 특별 보고관 보고서 (A/64/224) - 2009년 8월 4일
- 북한 인권상황 특별 보고관 보고서 (A/HRC/13/47) - 2010년 2월 17일
- 북한 인권상황 특별 보고관 보고서 (A/66/322) - 2011년 8월 24일

- 북한 인권상황 특별 보고관 보고서 (A/HRC/19/65) - 2012년 2월 13일
- 2012 북한 인권상황 특별 보고관 보고서 (A/67/370) - 2012년 9월 13일
- 북한 인권상황 특별 보고관 보고서 (A/68/319) - 2013년 8월 14일
- 북한 인권상황 특별 보고관 보고서 (A/HRC/26/43) - 2014년 6월 13일
- 북한 인권상황 특별 보고관 보고서 (A/69/548) - 2014년 10월 24일
- 북한 인권상황 특별 보고관 보고서 (A/HRC/28/71) - 2015년 3월 18일
- 북한 인권상황 특별 보고관 보고서 (A/70/362) - 2015년 9월 8일
- 북한 인권상황 특별 보고관 보고서 (A/HRC/31/70) - 2016년 1월 19일

유엔 조약기구 보고서

- 북한에 관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 코멘트 (CEDAW/C/PRK/CO/1) - 2005년 7월 22일
- 북한에 관한 유엔인권위원회 최종견해 (reg Art 40) (CCPR/CO/72/PRK) - 2001sus 8월 27일
- 북한에관한 유엔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E/C.12/1/Add.95) - 2003년 12월 12일
- 북한에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CRC/C/15/Add.239) - 2004년 7월 1일
- 북한에 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CRC/C/PRK/CO/4) - 2009년 3월 27일
- 중국에 관한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최종견해 (CAT/C/CHN/CO/4) - 2008년 12월 12일
- 중국에 관한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최종견해 (CAT/C/CHN/CO/5) - 2016년 2월 3일
- 중국에 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CRC/C/CHN/CO/2) - 2005년 11월 24일
- 중국에 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CRC/C/CHN/CO/3-4) - 2013년 10월 29일

북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문서

- 북한 보편적 정례검토 실무그룹 보고서 (A/HRC/13/13) - 2010년 1월 4일
- 보편적 정례검토 1차 주기에 접수된 권고안들에 관한 북한의 입장: 낮은 제출로 인해 유엔 문서번호가 발행되지 않음

- 북한 보편적 정례검토 실무그룹 보고서 (A/HRC/27/10) - 2014년 7월 2일
- 북한 보편적 정례검토 실무그룹 보고서, 부록: 검토 하에서 북한에 의해 제시된 결론 및/또는 권고사항, 자발적 약속과 답변 (A/HRC/27/10/Add.1) - 2014년 9월 12일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 인권에 관한 주요 유엔 권고안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대한 권고안

권고안	메커니즘
1. 주제: 여성차별; - 여성보호; - 양성평등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관련 권고안 시행을 통해 국가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모든 이러한 침해 및 학대를 종식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실시한다. 이 조치는 다음의 조치들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출신성분 체계에 기반한 국가후원 차별을 포함한 시민차별을 철폐하고, 양성평등을 보장하며, 성별기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실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위원회 결의안 (A/HRC/RES/28/22), 2015, 2(b) 절 •인권위원회 결의안 (A/HRC/RES/25/25), 2014, 3(b) 절
출신성분 체계에 기반한 국가후원 차별을 포함한 시민차별 철폐 및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성별기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들을 실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 보고관 (A/HRC/26/43), 2014, 42(b) 절
여성에게 공적생활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등 실제 양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들을 실시한다.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인 법, 규정 및 관행들을 철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위원회 (A/HRC/25/CRP.1), 2014, 1220(i) 절 / (A/HRC/25/63), 2014, 89(i) 절
차별금지법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여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및 민족적 측면을 지닌 이들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 보고관 (E/CN.4/2006/35), 2006, 81(f) 절 •특별 보고관 (A/61/349), 2006, 61 절
특히 그들이 직면하는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함으로써 여성, 아동 및 기타 그룹의 권리를 보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 보고관 (A/HRC/4/15), 2007, 71(f) 절 •특별 보고관 (A/62/264), 2007, 58 절 •특별 보고관 (A/HRC/7/20), 2008, 82 절 •특별 보고관 (A/63/322), 2008, 62(b)(vii) 절

1) 이 문서의 일부 권고안들은 축약 및 요약 되었고, 따라서 원본 문서에서는 구절로 인용되지 않을 수 있다. 정확한 단어선택은 각각의 유엔 문서번호를 참고하기 바란다.

권고안	메커니즘
계속해서(장기): (vi) 방지, 학대, 착취 및 폭력으로부터 인권보호를 강조함으로써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 등 특정 그룹이 직면한 차별을 극복하고 취약성을 완화시키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 보고관 (A/HRC/10/18), 2009, 80(b)(vi) 절 •특별 보고관 (A/64/224), 2009, 73(b)(vi) 절 •특별 보고관 (A/HRC/13/47), 2010, 88(b)(vi) 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정권에 적대적이라고 간주되는 집단에 속한 이들에 대한 모든 차별관행을 중단한다.	•특별 보고관 (A/68/319), 2013, 40 절
양성평등 및 여성권리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필리핀); [승인/시행 또는 현재 시행 중]	•보편적 정례검토 (A/HRC/13/13), 2010, 58 절
직장, 교육 및 보건 분야에서 평등원칙을 촉진 및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을 투자한다 (리비아 아랍 자마히리아); [승인/시행 또는 현재 실행 중]	•보편적 정례검토 (A/HRC/13/13), 2010, 59 절
특히 가장 취약한 상황의 여성 및 아동의 권리 보호를 증진한다 (리투아니아); [승인/시행 또는 현재 시행 중]	•보편적 정례검토 (A/HRC/13/13), 2010, 66 절
그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취약성을 경감하기 위해서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 내 특정 그룹의 인권을 개선 및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태국); [승인/시행 또는 현재 시행 중]	•보편적 정례검토 (A/HRC/13/13), 2010, 98 절
특히 여성 및 아동을 위한 인권을 더욱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계속해서 실시한다 (이란(이슬람 공화국)); [승인]	•보편적 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124.30 절
특히 취약그룹의 인권, 아동권리, 여성권리, 장애인 및 노인권리에 관한, 모든 분야의 국제인권 법률문서를 준수하여 국가 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태국); [승인]	•보편적 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124.31 절
아동, 여성 및 기타 취약그룹 보호와 그들이 권리를 완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한 더욱 현실적인 조치들을 실시한다 (쿠바); [승인]	•보편적 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124.34 절
신규 도입 법률들에 포함된 바에 따라 여성 및 아동 권리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한다 (동티모르); [승인]	•보편적 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para 124.36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조치들을 실시한다 (앙골라); [승인]	•보편적 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124.69 절
양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들을 실시한다 (이스라엘); [승인]	보편적 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124.70 절
양성평등권리를 제공하는 노력을 계속한다 (인도네시아); [승인]	보편적 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124.71 절
만연한 여성차별뿐만 아니라 “출신성분” 체계를 기반으로 한 국가후원 차별을 철폐한다 (미국); [명시]	보편적 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125.41 절
출신성분 체계 하에서 조부모의 범죄혐의로 인한 시민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실시한다; 실제로 양성평등을 보장한다; 여성 및 소녀들에 대한 폭력문제들을 해결한다 (호주); [명시]	보편적 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125.41 절

권고안	메커니즘
차별금지의 원칙을 보장하는 기존 법률을 시행하고, 협약 2조의 전면적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보장한다. 2)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C/PRK/CO/4), 2009, 20 절
협약 1조에 따라, 직간접적인 차별을 망라한 차별의 정의를 헌법이나 기타 적절한 국가법률에 완전히 통합한다;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정책을 실시하고 법에 따른(공식) 그리고 사실상의(실질적인) 남녀평등을 보장한다; 특히 간접적 차별의 의미 및 범위에서, 그 중에서도 입법자, 법관 및 변호사업 종사자들에게 협약에 대한 의식고취 캠페인을 실시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C/PRK/CO/1), 2005, 20 절
우선적으로 협약의 조항에 따라 수정되어야 하는 1946년 성평등법을 수정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C/PRK/CO/1), 2005, 22 절
여성을 차별하는 조항을 파악하기 위한 모든 제정법 ³⁾ 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와 법이 협약 조항들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 개혁 과정을 즉각 시작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C/PRK/CO/1), 2005, 24 절
협약 2조 (c) 에 따라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시행한다; 이러한 해결책들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C/PRK/CO/1), 2005, 26 절
간접 및 숨은 차별을 협약 시행의 방해물로 인식하고 분석한다. 차별이 발생하는 곳을 파악하고 의식을 고취하며 적극적으로 철폐하는 조치들을 포함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C/PRK/CO/1), 2005, 28 절
국가조정위원회와 모든 수준의 관련 정부기관들 사이의 증가된 상호작용을 통해, 모든 단계 및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성주류화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협조적인 실천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 도입 및 시행한다; 우선순위 결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 여성 그룹들을 포함시키고 그 시행을 모니터링하고 효과를 평가하며 관련 결과들을 고려해 적절하게 조정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다음 정례보고서에 여성을 위한 10개년 국가 실천방안의 상세 정보를 수록하고 이를 베이징 행동강령과 현 최종의견의 시행 맥락으로 놓는다; 성인지 교육을 제공하고 관련 기관들에 성담당관을 신설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C/PRK/CO/1), 2005, 32 절
이혼사례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판사들이 조정절차를 활용을 검토하고 여성의 권리가 적법하게 보호되는지 보장하도록 장려한다; 입법자, 법관 및 공무원들, 특히 법집행 담당자와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한다; 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서비스 수립과 의식고취 캠페인 및 공공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C/PRK/CO/1), 2005, 40 절

- 2) OHCHR 주: CRC 2.1조. 당사국들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어린이의 인종 또는 그 부모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국가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근원, 재산, 장애, 출생신분 또는 기타 신분에 상관없이, 그들 사법권 내 각각의 어린이들에게 현 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 3) CEDAW/C/PRK/CO/1의 23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권고안은 특히 보호 법률을 나타낸다; 여성의 최소 결혼 가능연령을 17세로, 남성의 최소 결혼가능연령을 19세로 설정하는 법률; 그리고 14세 미만 아동의 시민권 결정에 관한 시민권법 제7조.

권고안	메커니즘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협약 조항들을 명백히 반영하고 다음 정례보고서에 그 정보 수록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C/PRK/CO/1), 2005, 55절
차별금지의 원칙을 보장하는 기존 법들의 시행과 협약 2조의 전면적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하고, 모든 이유의, 그리고 모든 취약그룹에 관한 차별 철폐를 위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을 도입한다. 소녀들과 여성들에 관한 차별적 고정관념을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C/15/Add.239), 2004, 28절
2. 주제: - 여성차별; - 성폭력 및 성별기반 폭력; - 이혼할 권리	
가정폭력, 국가 대리인에 의한 그리고/또는 국가 기관 내의 성폭력 및 성별차이에 기반한 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한다.	•조사위원회 (A/HRC/25/63), 2014, 89(i)절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이러한 폭력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가정폭력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을 도입하고,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과 또한 폭력 피해자인 여성과 소녀들이 즉각적인 보상 및 보호 수단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한다.	•특별 보고관 (A/66/322), 2011, 69절
가정폭력 방지 등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률을 통과시켜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를 저지른 개인들의 기소를 가능하게 하고, 희생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수립한다.	•보편적 정례검토 (A/HRC/13/13), 2010, 19절 (미국); [승인] 시행 또는 현재 시행 중 •보편적 정례검토 (A/HRC/13/13), 2010, 65절 (칠레); [승인] 시행 또는 현재 시행 중 •보편적 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para 124.107절 (칠레); [승인] •보편적 정례검토 (A/HRC/13/13), 2010, 67절 (브라질); [승인] 시행 또는 현재 시행 중 •보편적 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124.105절 (프랑스); [승인]
가정 성폭행과 수용소의 성폭행에 적용되는 성폭행의 정의를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법률을 제정한다 (캐나다); [명시]	•보편적 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124.106절
전 인구, 특히 여성과 아동들의 모든 기본권과 자유를 존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범죄, 폭력행위와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아르헨티나); [승인]	•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124.117절

권고안	메커니즘
<p>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의 영향범위, 원인 및 결과들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정례보고서에 수록한다; 예컨대 학대의 조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 종사자들을 교육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가정폭력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을 도입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일반권고안 19에 따라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과 폭력 피해자인 여성과 소녀들이 즉각적인 보상 및 보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하고, 법집행 기관들이 폭력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포괄적인 조치들의 도입에 우선순위를 둔다.</p>	<p>•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C/PRK/CO/1), 2005, 38 절</p>
<p>가정폭력 퇴치를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들을 포함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한다.</p>	<p>•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 (E/C.12/1/Add.95), 2003, 39 절</p>
<p>모든 아동들이 모든 형태의 신체적, 성적 및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된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사회, 특히 아동이 포함된 민간 단체들과 협력하여 보고서의 권고안들을 행동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러한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강력한 조치 추진을 가속화한다;</p>	<p>•유엔 아동권리협약 (CRC/C/PRK/CO/4), 2009, 33(b) 절</p>
<p>사례의 수와 폭력의 범위, 성적 학대와 방치를 모니터하기 위한 메커니즘 강화한다;</p>	<p>•유엔 아동권리협약 (CRC/C/PRK/CO/4), 2009, 41(b) 절</p>
<p>아동의 성착취 방지를 위한 입법 및 기타 조치들을 강화한다; 성착취 피해자인 아동들을 보호하고 성적 학대 및 착취 가해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및 기타 조치들을 실시한다; 회복을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도움 및 상담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이 제공된다는 점을 보장한다; 1996년, 2001년, 2008년의 1, 2, 3차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세계회의에서 도입된 행동 및 국제적 약속을 위한 선언 및 아젠다(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and the Global Commitment)에 따라, 아동 피해자들의 보호,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한다;</p>	<p>•유엔 아동권리협약 (CRC/C/PRK/CO/4), 2009, 67(a)(b)(c)(e) 절</p>
3. 주제: - 인신매매	
<p>여성 인신매매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여성이 이러한 폭력에 취약하게 된 구조적 원인들을 해결한다.</p>	<p>•조사위원회 (A/HRC/25/63), 2014, 89(i) 절</p>
<p>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난민유출을 야기하는 근본원인들을 해결하고, 인간밀수, 인신매매와 강탈을 통해 난민들을 착취하는 이들을 기소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추방되었거나 그곳으로 돌아온 국민들이 존엄성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고, 어떠한 종류의 처벌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한다;</p>	<p>•총회 결의안 A/RES/69/188, 2014, 11(c) 절 •총회 결의안 A/RES/67/181, 2013, 5(c) 절 •총회 결의안 A/RES/66/174, 2012, 5(c) 절 •총회 결의안 A/RES/65/225, 2011, 5(c) 절 •총회 결의안 A/RES/64/175, 2010, 5(c) 절 •총회 결의안 A/RES/63/190, 2009, 5(c) 절 •총회 결의안 A/RES/62/167, 2008, 4(b) 절</p>

권고안	메커니즘
추방의 근본원인들을 해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경우 추방된 이들의 기소 및 희생을 예방하고, 추방, 인간밀수 및/또는 인신매매를 당한 이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하며, 귀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장려한다;	•특별 보고관 (E/CN.4/2005/34), 2005, 68(f) 절
계속해서(장기): 난민유출의 근본원인들을 해결한다; 그리고 희생자를 범인 취급하지 않고, 인간밀수 및 인신매매를 통해 난민들을 착취하는 이들을 범인으로 취급한다;	•특별 보고관 (A/HRC/4/15), 2007, 71(e) 절 •특별 보고관 (A/62/264), 2007, 58 절 •특별 보고관 (A/HRC/7/20), 2008, 82 절 •특별 보고관 (A/63/322), 2008, 62(b) (v) 절 •특별 보고관 (A/HRC/10/18), 2009, 80(b)(vii) 절 •특별 보고관 (A/64/224), 2009, 73(b) (vii) 절 •특별 보고관 (A/HRC/13/47), 2010, 88(b)(vii) 절
인신매매 피해자들, 특히 타국으로 보내진 여성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한다;	•특별 보고관 (A/70/362), 2015, 81(i) 절
국제적 대화 및 협력을 통한 조치를 포함한 인신매매 방지 조치들을 강화하고 대중의 의식고취 캠페인 증대와 법집행 담당자들을 위한 인권교육을 통한 지원 등 인신매매 희생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보편적 정례검토 (A/HRC/13/13), 2010, 68 절 (필리핀); [승인/시행 또는 현재 시행 중] •보편적 정례검토 (A/HRC/13/13), 2010, 69 절 (말레이시아); [승인/시행 또는 현재 시행 중] •보편적 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124.110 절(이집트); [승인]
국가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을 창제 및 도입하고, 인신매매 피해여성 및 아동들이 북한으로 돌아와서 국외추방으로 인해 국가를 비합법적으로 떠난 것에 대해 처벌받는 모든 관행 철폐한다 (이스라엘); [명시]	•보편적 정례검토 (A/HRC/13/13), 2010, 32 절
특히 의식고취 프로그램과 제도 및 법적 프레임워크 강화를 통해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및 폭력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한다 (스리랑카); [명시]	•보편적 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124.109 절
인신매매나 상업적 성착취의 희생자가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여성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집행 담당자, 이민 담당자 및 국경 경찰들을 인신매매 및 기타 형태의 착취의 원인, 결과 및 영향범위에 관한 훈련을 제공한다; 여성과 소녀들을 목표로 한 인신매매의 위험과 영향에 관한 의식고취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피해자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의 예방, 기소 및 처벌을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이러한 현상들을 평가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한다; 증가된 국제적, 지역적 및 양자적 협력을 통해 이러한 현상들을 다루는 노력을 강화한다. 연구 결과 및 진전 사항에 관한 정보가 다음 정례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C/PRK/CO/1), 2005, 42 절

권고안	메커니즘
협력하는 자세로, 인권위원회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 보고관 보고서 등 민간 및 기타 출처들을 통해 주목하게 된, 협약 8조를 위반하는 여성 인신매매에 관한 입증된 혐의 수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인권위원회 (CCPR/CO/72/PRK), 2001, 26절
특히 아동을 포함하는 인신매매의 특성과 범위를 가늠하는 포괄적인 연구를 실시한다; 성착취 및 인신매매로부터 18세 이하 모든 소년 및 소녀를 보호한다는 점을 관련 법률에서 보장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C/15/Add.239), 2004, 63(a)(b)절
인신매매 아동들이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 간주되고 보호된다는 점과 그들에게 충분한 회복 및 사회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점을 보장한다;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유엔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을 보완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매매를 방지, 억제, 처벌하기 위한 유엔의정서(유엔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유엔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비준을 고려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C/PRK/CO/1), 2005, 42절
4. 주제: - 귀환자; - 법 집행	
즉시(단기): 해외망명을 원하는 이들과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폐지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구급하고 비인도적으로 취급을 하지 않도록 분명히 지시한다;	•특별 보고관 (A/63/322), 2008, 62(a)(ii)절 •특별 보고관 (A/64/224), 2009, 73(a)(ii)절
정당한 여행허가 없이 해외로 떠났던 여성 경제적 귀환자들이 그들의 가족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을 모든 형태의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C/PRK/CO/1), 2005, 42절
중국에서 본국으로 소환된 국민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하거나 수감, 사형, 고문, 임의적 구금, 고의적 기아, 불법 체감수색, 강제 낙태 및 기타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조사위원회 (A/HRC/25/63), 2014, 89(m)절
구류 시설에서 여성을 고문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여성 범죄자들을 남성들에게서 분리하여 여성 간수들이 감독한다(미국); [명시]	•보편적 정례검토 (A/HRC/13/13), 2010, 28절
고문 사용 및 기타 형태의 학대 사례들, 특히 교도소 시스템에서 여성폭력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다(러시아 연합); [명시]	•보편적 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124.99절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즉시 수립한다(아일랜드); [명시]	•보편적 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124.100절
강제 낙태 관행을 철폐한다(캐나다); [주목]	•보편적 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124.108절
특히 법 집행 당국 및 기타 당국에 의해 자행된 폭력행위 및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조사하고 시의 적절하게 기소함으로써 그들이 처벌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 및 아동들이 구금되어 성적 학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에콰도르); [명시]	•보편적 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124.119절

권고안	메커니즘
위원회는 당사국이 구금된 여성의 수나 상태에 관한 정보를 다음 보고서에 수록하도록 촉구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C/PRK/CO/1), 2005, 50절
성인지 및 아동인지 관점의 적극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는 법 집행 기구 및 대중의 역량을 구축하고, 비판적 분석을 추진한다;	•특별 보고관 (E/CN.4/2005/34), 2005, 68(h) 절 •특별 보고관 (A/60/306), 2005, 68(a) (viii) 절
5. 주제: - 여성의 대표 및 참여	
관리 직책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수를 늘리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완전한 입법 조항 구축을 예상한다(알제리); [수용/시행 또는 현재 시행 중]	•보편적 정례검토 (A/HRC/13/13), 2010, 20절
최고인민회의 및 기타 국가 의사결정기구들에서 여성의 대표 비율을 늘리는 것을 타당하게 검토한다(스리랑카); [승인/시행 또는 현재 시행 중]	•보편적 정례검토 (A/HRC/13/13), 2010, 86절
여성이 정치적 및 경제적 영역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접근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양성평등을 추진하는 국가기관들의 자금조달 및 가시성을 강화한다(노르웨이); [승인/시행 또는 현재 시행 중]	•보편적 정례검토 (A/HRC/13/13), 2010, 87절
여성의 공적생활 참여 증대를 장려하는 입법 및 행정적 조치들 고려한다(벨라루스); [승인]	•보편적 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124.72절
국가 및 지역 정부의 영향력 있는 직책에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노르웨이); [승인]	•보편적 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124.73절
의사결정 기관들에서 여성 대표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남수단); [승인]	•보편적 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124.74절
여성권리단체들의 활동을 위한 더 나은 상황을 조성하는 조치들을 수립한다(베네수엘라(볼리비아 공화국)); [승인]	•보편적 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124.76절
인민위원회에서 여성의 충분한 대표성을 보장하고, 협약 상 여성의 평등권 및 의무에 관한 위원회에 교육이 제공된다는 점을 보장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C/PRK/CO/1), 2005, 26절
여성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충분한 가시성, 힘과 자원을 가진 국가기구4)가 제공된다는 점을 보장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C/PRK/CO/1), 2005, 30절
모든 영역의 의사결정 직책에서 여성의 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해외 사절단을 포함한 해외근무에서 여성 대표성을 증대한다; 협약 4조 1절과 위원회의 일반 권고안 25에 따라 임시 특별 조치들을 도입하고,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에서 여성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특별 교육프로그램과 의식고취 캠페인을 통해 여성을 직권이 있는 직책으로 승진 및 선출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가속화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C/PRK/CO/1), 2005, 44절

4) OHCHR 주: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시행을 위한 국가조정위원회(The 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권고안	메커니즘
협약 7조에 따라 여성의 (인권) 단체 수립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협약 상의 당사국 의무 시행에 대한 감독책임에 있는 독립적인 인권기관을 설립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C/PRK/CO/1), 2005, 52 절
공공부문 노동인력, 특히 고위 직책에서 여성 참여 증대를 통해 협약 3조와 26조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하고, 여성의 지위, 특히 주요 경제부문에서 그들의 책임 및 보수 수준에 관한 통계자료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인권위원회 (CCPR/CO/72/PRK), 2001, 27 절
여성 차별금지의 원칙에 완전한 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국내법률을 검토한다;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권리와 그들의 발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식고취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도입 및 시행한다.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 (E/C.12/1/Add.95), 2003, 33 절
6. 주제: - 경제 및 사회적 권리; - 빈곤 퇴치; - 생활조건; - 음식에 대한 권리	
여성의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여성의 상황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빈곤퇴치 조치들을 도입한다; 여성, 특히 시골지역의 여성들이 식량공급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갖는다는 점을 보장하는 국제원조를 모색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C/PRK/CO/1), 2005, 42 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공적 원조뿐만 아니라, 정당한 법 절차에서 사회적 지출을 위한 예산 할당을 증가시킬 가능성과 직장을 찾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에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 (E/C.12/1/Add.95), 2003, 38 절
전국 식량배급의 국제적 운영 개시를 즉시 허용한다; 정부의 식량배급에 있어 차별을 철폐하여, 아동, 임산부, 장애인 및 노인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스페인); [명시]	•보편적 정례검토 (A/HRC/13/13), 2010, 13 절
여성과 아동들을 포함한 취약그룹의 존엄성과 더 나은 생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및 행정적 절차를 검토한다 (말레이시아); [승인/시행 또는 현재 시행 중]	•보편적 정례검토 (A/HRC/13/13), 2010, 17 절
필요한 이들에게 식량 및 기타 필수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및 임산부, 육아여성들의 특정 니즈를 고려하고, 전체 영토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인도주의 기구들 및 기타 인도주의 활동가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한다 (스위스); [승인/시행 또는 현재 시행 중]	•보편적 정례검토 (A/HRC/13/13), 2010, 97 절
아동, 여성 및 노인과 같은 소외되고 취약한 그룹들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구체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빈곤퇴치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한다 (스리랑카); [승인]	•보편적 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124.154 절
세계식량프로그램에 따라 노인, 여성 및 아동 등 가장 취약한 그룹에 최우선권을 두는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이 프로그램들이 투명하게 시행된다는 점을 보장한다 (우루과이); [승인]	•보편적 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124.55 절
특히 식량, 교육 및 직장에 관한 권리와 관련하여,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을 보장한다 (이탈리아); [승인]	•보편적 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124.75 절

권고안	메커니즘
국민들이 식량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차별없이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한다. 여성 및 거리의 아이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그룹들의 니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조사위원회 (A/HRC/25/63), 2014, 89(j) 절
국가의 모든 장소에서 신체적으로 가장 취약한-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이나 환자, 구금되거나 감옥에 수감된 이들- 모든 이들에게 식량이 제공 된다는 점을 보장한다.	•사무총장 (A/63/332), 2008, 56 절
7. 주제: - 교육에 대한 권리	
고등 교육에 있어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과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는 점을 보장한다; 특히 전통적인 성별 고정관념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공부 하는 과목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는 문제에 관하여 일반 대중과 아동들을 일깨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C/15/Add. 239), 2004, 55(b)(c) 절
협약 2(f)조와 5(a)조에 따라, 교육 및 고용분야와 그들 삶의 모든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여성 및 소녀들의 차별을 영속화시키는 숨은 패턴 등 여성과 남성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고정관념적인 태도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한다. 이러한 노력들에는 어린시절부터 시작하는 모든 수준의 교육적 조치들; 학교 교과서 및 커리큘럼 수정;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해결하기 위해 남성 및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의식고취 캠페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CEDA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C/PRK/CO/1), 2005, 36 절
8. 주제: - 건강에 대한 권리	
차별없는 공공의료서비스 모든 이들에게 확대한다.	•사무총장 (A/63/332), 2008, 56 절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과 아동들에게 충분한 영양과 건강관리를 제공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국가의 현 보건 상황에 대응하여 예방적이고 치료적 효과가 있는 효과적인 조치들을 실시하고 보건부문에 대한 예산 할당을 증가시킨다.	•특별 보고관 (A/66/322), 2011, 68 절
2006-2010년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전략, 2008-2012년 에이즈 방지를 위한 국가전략, 2008-2012년 1차 진료전략, 2001-2010년 아동 웰빙을 위한 국가적 행동방안과 2008-2012년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인 행동방안의 시행을 통해, 여성, 아동 및 장애인들의 권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보장한다 (시리아 아랍 공화국); [승인/시행 또는 현재 시행 중]	•보편적 정례검토 (A/HRC/13/13), 2010, 38 절
유아 사망률과 산모 사망률을 더욱 줄이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들을 실시한다 (시리아 아랍 공화국); [승인/시행 또는 현재 시행 중]	•보편적 정례검토 (A/HRC/13/13), 2010, 99 절
MDG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산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생식건강 전략 및 여성 건강의 기타 프로그램들을 실시한다 (투르크메니스탄); [승인]	•보편적 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124.168 절
산모 사망률을 더욱 줄이기 위해 여성 보건을 증진하는 강력한 조치들을 실시한다 (방글라데시); [승인]	•보편적 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124.169 절

권고안	메커니즘
의료시스템을 강화하고 특히 아동 및 산모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의료 시스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우루과이); [승인]	•보편적 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124.170 절
국가의 모든 지역에서 여성의 일반 및 생식의료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및 이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상세 정보를 다음 정례 보고서에 수록한다; 여성 및 건강에 관한 위원회 일반 권고안 24에 따라 시골지역 여성을 포함한 여성의 생식 및 성건강 프로그램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취해진 조치들의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성건강 및 생식건강에 관한 정책에서 남성 및 소년들을 목표로 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C/PRK/CO/1), 2005, 46 절
여성들과 남성들 사이에서 HIV/AIDS 예방 조치들을 강화한다; HIV/AIDS의 위험 및 영향에 관한 전국적 의식고취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근거로 한 포괄적인 HIV/AIDS 연구 및 통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의 이용을 보장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C/PRK/CO/1), 2005, 48 절
태아 의료서비스와 출생 시 의료지원을 포함한 산모관리의 상황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을 실시한다.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 (E/C.12/1/Add.95), 2003, 44 절
아동 및 엄마들의 높은 영양실조율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부모들에게 기본 소아보건 및 영양, 모유수유의 이점, 위생 및 환경 위생과 생식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산모 및 소아 건강관리와 관리자 차원 및 준국가적 차원에서의 개발을 담당하는 정부기구 수립을 고려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C/PRK/CO/4), 2009, 45(a)(b) 절
9. 주제: - 연구 및 자료 수집	
여성 상황의 추세를 가늠하고 여성의 사실상 평등의 진전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측정가능한 지표들의 포괄적 체계 실행을 시작한다; 공무원들의 개념 교육과 이러한 자료수집 및 분석 노력 개발을 위한 국제적 원조를 모색한다; 실시된 조치들과 달성된 결과들의 영향을 표시하는 성별 및 시골, 도시지역 별로 분석된 통계자료 및 분석을 다음 보고서에 수록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C/PRK/CO/1), 2005, 34 절

기타 국가들과 국제사회 전반에 대한 권고안

권고안	메커니즘
1. 주제: - 농르플레망; - 난민 보호	
<p>농르플레망 원칙을 존중하고, 이에 따라 국제 인권 감시자들에 의해 입증된 그곳의 처우가 괄목할만하게 향상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강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삼가한다; 망명 및 기타 지속가능한 보호 수단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도망쳐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완전히 통합되고 적법하게 차별로부터 보호된다는 점을 보장한다;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람들의 활동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와 기타 안보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한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람들이 국적이나 기타 형태의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의 대사관 및 영사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p>	<p>• <i>조사위원회 (A/HRC/25/63), 2014, 90(a) 절</i></p>
<p>농르플레망 원칙을 철저히 고수한다. 어떠한 국가도 개인들을 고문이나 기타 심각한 인권침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송환해서는 안된다.</p>	<p>• <i>인권 고등판무관(A/HRC/31/38), 2016, 61 절</i></p>
<p>난민들의 권리, 특히 농르플레망 원칙을 존중하고, 강제로 난민들을 출생지로 돌려 보내는 일을 중단하며, 반대의 경우 난민이나 피난처를 모색하는 이들의 구급을 야기할 수 있는 국가 이민법의 구속력(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p>	<p>• <i>특별 보고관(E/CN.4/2006/34), 2006, 69(b) 절</i> • <i>특별 보고관(A/61/349), 2006, 62 절</i> • <i>특별 보고관(A/HRC/4/15), 2007, 72(b) 절</i> • <i>특별 보고관(A/62/264), 2007, 59 절</i> • <i>특별 보고관(A/HRC/7/20), 2008, 83 절</i> • <i>특별 보고관(A/63/322), 2008, 63(b) 절</i> • <i>특별 보고관(A/64/224), 2009, 74(iii) 절</i> • <i>특별 보고관(A/66/322), 2011, 70 절</i> • <i>특별 보고관(A/68/319), 2013, 37 절</i> • <i>특별 보고관(A/69/548), 2014, 55 절</i></p>
<p>농르플레망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회원국 영토에서 피난처를 모색하거나 그곳을 통해 이동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람들을 보호한다;</p>	<p>• <i>특별 보고관(A/HRC/19/65), 2012, 59 절</i> • <i>특별 보고관(A/67/370), 2012, 70 절</i> • <i>특별 보고관(A/HRC/28/71), 2015, 91(g)</i> • <i>특별 보고관(A/70/362), 2015, 82(e) 절</i> • <i>특별 보고관(A/HRC/31/70), 2016, 51(f) 절</i></p>
<p>[몽골]: 여성 및 아동 등 다양한 취약그룹들을 고려하고 유엔HCR과 긴밀히 공조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한다; 국제 인권법과 난민에 관한 국제법을 계속해서 준수하고, 효과적인 시행 조치들을 보장하고, 국경 경찰들을 위한 인권 및 난민법(특히 농르플레망 원칙) 교육 등을 통해 법 집행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피난처를 모색하는 이들에 대한 동정과 이해를 함양하기 위해 대중들의 인식을 고취한다;</p>	<p>• <i>특별 보고관(A/60/306), 2005, 67(b)(c) 절</i></p>

권고안	메커니즘
[중국]: 협약 2조에 명시된 논르플레망 원칙을 국내 법률에 완전히 통합시키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조치들을 도입하고 유엔HCR과 협력하여 국가적 망명절차를 즉시 수립한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CAT/C/CHN/CO/5), 2016, 47(a) 절
[중국]: 논르플레망 원칙을 존중하고 이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들을 포함해, 보호자 동행 아동이나 보호자 미동행 아동, 또는 이산자녀 누구도 상당한 피해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 송환되지 않으며 이 원칙이 모든 아동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국적에 상관없이 그리고 차별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보장하는 협약의 의무를 상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특히 아동들과 중국인 사이에서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체포 및 송환을 중단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엄마들의 자녀들이 정체성과 교육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기본권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장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CRC/C/CHN/CO/3-4), 2013, 83(a)(c) 절
[중국]: 예컨대 보호자 미동행 미성년자에 관한 위원회 일반코멘트 No.6 (2005)에 따라, 이민법 위반에 대한 불균형적인 처벌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들을 포함해, 보호자 미동행 아동 누구도 아동에게 상당한 피해의 실질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 송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CRC/C/CHN/CO/2), 2005, 82(b) 절
[중국]: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공식적으로 떠나는 것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알려진 사실을 고려해서, 송환 대상인 사람들이 고문의 실질적인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충분한 신분판단 심사과정을 수립하고,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에 국경지역과 해당 사람들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해야 한다; 3조의 의무들이 완전히 충족된다는 점을 보장한다; 판단의 검토를 위한 충분한 사법적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고 본국소환 대상자 각각이 사용가능한 충분한 법적 보호가 있다는 점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귀환후 모니터링 관리를 보장한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CAT/C/CHN/CO/4), 2008, 26 절
2. 주제: – 북한 난민의 합법적 지위	
중국인들과 결혼하거나 중국국적을 가진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 및 남성들의 신분을 합법화한다. 해당되는 경우, 모든 이러한 아동들이 출생신고와 중국국적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고 교육 및 보건을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한다.	•조사위원회 (A/HRC/25/63), 2014, 90(e) 절
3. 주제: – 인신매매	
국제 난민법 상 부과된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유엔의 기술원조를 요청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효과적 보호를 보장한다;	•조사위원회 (A/HRC/25/63), 2014, 90(c) 절
피해자들에게 국가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와 그 국가의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법적보호 및 의료, 교육, 고용기회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등, 인신매매에 대한 피해자 중심 및 인권기반 접근법을 도입한다;	•조사위원회 (A/HRC/25/63), 2014, 90(d) 절

권고안	메커니즘
<p>은밀한 경로를 줄이기 위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함께 평화롭고 안전한 이주경로를 증진하고, 피해자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하면서 인간밀수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을 촉진한다;</p>	<p>•특별 보고관 (E/CN.4/2005/34), 2005, 69(c) 절 •특별 보고관 (A/60/306), 2005, 68(b)(iii) 절</p>
<p>[몽고]: 사람들이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인간밀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들을 피해자로 대우하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며 피해자 차원의 절차를 사용한다;</p>	<p>•특별 보고관 (A/60/306), 2005, 67(d) 절</p>
<p>[중국]: 밀입국 이주자들과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강제 소환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난민 신분을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유엔HCR 직원들에게 국경을 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인들에 대해 방해받지 않는 접근권을 허용한다.</p>	<p>•유엔 고문방지위원회 (CAT/C/CHN/CO/5), 2016, 47(b) 절</p>
<p>4. 주제: - 북한과의 대화에서 여성 인권문제 제기</p>	
<p>[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지도자와 고위 당국 관계자들에게 중국에서 송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 문제, 중국 국적 유아 살해, 송환된 여성들에게 가해진 강제 낙태와 기타 인권침해 문제들을 제기한다.</p>	<p>•조사위원회 (A/HRC/25/63), 2014, 90(f) 절</p>

북한 UPR 심사 절차 활용 방안과 사례

Ⅰ Michelle Kissenkoetter (국제인권연맹 아시아국장)

국내 NGO의 유엔인권메커니즘 활용 사례와 제언

Ⅰ Joanna Hosaniak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 큰 소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이런 사건이 드물게 발생하는 가운데, 종종 그 중심에 조선인민공화국(또는 북한)이 있다. 예를 들어, 2010년도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UPR)의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북한은 다른 국가로부터 받은 117개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많은 국가들은 북한의 그런 행동이 자신들의 권고안과 유엔의 가치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이해했다. 유엔 활동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해당 국가 대표들은 얼굴을 붉히고 있는 북한 대사 앞에 모여 설명을 요구했다. 국가별 인권 상황정기 검토 중에 북한이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당국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북한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회원국들도 북한의 애매한 태도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북한 대사가 2014년 3월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의 대화 중 일본 대표단의 발언을 막기 위해 애쓰다 방을 나갔을 때도 모든 이해 당사국들은 상당히 실망했었다.

북한은 아마도 NGO가 대하기에 가장 어려운 국가일 것이다. NGO 활동 중 대부분은 증언 및 직접 관측을 기반으로 하는 보고에 이어 해당 국가에서의 법 이행에 대한 감시와 현장 상황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비록 이런 전형적인 NGO 활동의 대부분이 북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는 하지만 그런 장애들도 북한인권시민연합(NKHR)과 같은 NGO들이 1999년 이후 유엔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국제 사회에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알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NGO들은 유엔인권위원회에

이어 유엔인권소위원회, 현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여러 활동들을 주도해왔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난하는 결의안 지지를 위해 로비를 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좌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유엔 책임성 전문가 패널의 수립을 지지해왔다. 만약 시민사회가 이런 활동을 시작하지 않고,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 피해자들이 없었다면 이런 행동 중 어떤 행동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초에는 이런 비판들 중 상당수가 유엔 시스템 또는 국제사회가 접근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만 했다. 초기에는 일부 NGO만이 중요한 인권 침해 양상에 대한 핵심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여성의 권리에 중점을 두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북한의 여성 문제를 다루오면서 활용했던 전략들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우리는 유엔 시스템 전체에 집중하며 유엔 인권 조약 기구, 특별 절차, 국가별인권 상황 정기 검토, 그리고 유엔 인권 이사회 결의안을 활용해 왔다. 인권 침해 상황을 비난하는 결의안과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좌관의 권한을 지지하며, 그와 동시에 정기 검토 대상인 북한의 인권 조약 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위원회에 제출할 정보를 준비했다. 북한이 이런 위원회들과의 협력을 중단하고, 그 대신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를 활용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활동 방향을 정했다.

북한은 4개의 유엔 인권 조약, 즉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을 비준했다. 이와 같은 해당 협약에 따라 북한은 당사국의 의무 이행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4개의 위원회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최근에는 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도 비준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서명했다. 북한이 결의안 및 특별 보좌관의 권한을 모두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결의안에 기반한 북한과의 협력은 어려운 상황인데, 그와 동시에 북한은 각각의 협약에 따라 정기 보고 요건을 충족시켰고 위원회의 전문가 검토를 위해 여러 부처 소속 대표들을 보내기도 했다. 이는 NGO로서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이행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인권 위원회는 2001년에, 그리고 2003년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에 기반하여 북한을 검토했고, 2005년에는 뉴욕의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위원회가 해당 협약의 이행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다. 그리고 2009년 1월에는 유엔아동권리 위원회가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북한 아동의 인권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005년도와 2009년도의 검토 전에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 및 아동권리 위원회에 평가보고서(shadow report)를 제출하고, 해당 위원회의 관련 세션 시작 전에 발표했다. 북한의 보고가 매우 개괄적이고, 전문성이 취약하며(신뢰성 있는 통계의 지속적 부족 등), 북한의 NGO로부터 독립적인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회원들은 북한 내 문제의 범위와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제 3자의 정보에 상당히 의존했다. 2005년도에는 대한민국의 NGO 2곳에서 북한에 대한 독립적 정보를 제출했고 여성차별철폐협약 세션에 참가했으며, 2009년도에는 북한인권시민연합만이 전문가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세션을 감시한 유일한 NGO였다.

2005년, 북한인권시민연합 대표단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의 일부 전문가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북한 여성들에게 영향을 주는 가장 긴급한 문제, 특히 가정 폭력, 중국에서 본국으로 송환된 이후의 억류, 유아 살해 및 낙태 강요 등 억류 중 경험하게 되는 잔인한 상황, 식량,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계급 제도의 만연뿐만 아니라 성인 여성 및 여아 인신매매에 대해 보고하였다. 연합은 또한 2009년에는 북한 대표단이 전문가들과의 질의 응답 세션을 갖기 하루 전에 아동권리 위원회의 모든 전문가들에게 별도로 보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해당 보고를 통해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한 대표단에게 주요 사안에 대한 권고 및 질문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5년도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와의 세션에서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 결과 아동권리 위원회의 검토에서는 훨씬 더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다룰 수 있었으며 그 당시 북한 대표단이 어떤 질문들을 들었을 때는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또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하면서 극적인 순간이 연출되기도 했다.

2005년,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의 전문가들은 북한 대표단 앞에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을 던졌다. 그들 중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보고서에 여성 폭력에 관한 논의가 부재하다는 점을 다뤘고, 전문가들이 여성에 대한 가시적인 또는 숨겨진 차별이 존재한다고 파악한 또 다른 문제점(식량 제공, 교육, 보건 또는 부부간 성관계에 대한 권리)들도 제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제공한 서면 및 구두로 진행된 답변에 대해 불신감을 표출했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 중 한 명은 인구 수가 북한만큼 되는 국가의 경우 수만 명이 구금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단지 7명의 여성만이 미결구금 상태였고, 40명만이 유죄 판결을 받고 교화 시설에 구금되어 있다는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의문을 가졌다. 해당 전문가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여성들의 처우에 관해서도 질문을 했다.

많은 질문에 대해 북한은 오류가 있거나 모순된 정보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허가 없이 국경을 통과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했지만 식량 또는 다른 생필품을 찾아 국경을 넘은 개인들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했다. 대표단은 또한 북한에는 감옥이 없지만 범죄자들은 엄격한 감독 하에 노동을 하고,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받는 노동 교화소로 보내진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력, 특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의 진행과 특별 보좌관 및 COI의 보고서로 인해 북한의 태도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일례로, 북한은 최근에 이전에는 부인했던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노동 교화소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와 동시에, 특별 보좌관 보고서 및 유엔 인권 위원회 및 이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결의안에서는 여성 폭력 문제, 구금 시 상황, 인신매매, 송환 여성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계속 다뤘다. 그러나 결의안이 인권 조약의 이행을 관리 감독하는 위원회의 검토를 대체할 수 없다. 각 위원회 별로 북한이 아직 제출하지 않은 보고서도 몇 건이 있으며, 2009년도의 검토가 마지막 검토였다. 비록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일부 외교관들이 최근에 북한이 제출 지연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북한이 이런 위원회들과의 협력을 지속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 북한인권시민연합은 2009년과 2014년도의 북한의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UPR)를 활용하여 여성 문제를 우선과제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매 4년마다 각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상호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검토 대상 국가에 관한 세 가지 보고서에 대한 답으로 다른 회원국들이 질문과 권고안을 제출한다. 1차 보고서는 검토 대상 국가가 제출하며, 2차 보고서는 유엔 산하 기관들이 양산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이 준비한다. 3차 보고서 또한 NGO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반하여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제출한다.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가 회원국들이 검토 대상 국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다른 회원국들과 대면하는 대규모 캠페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검토 대상 회원국과의 공개 토론 과정에서 NGO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유엔 및 회원국에게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북한인권시민연합은 2009년과 2011년, 그리고 2013년에 각각 여성의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특히, 2013년도 보고서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여성인권 실태”에서는 2009년도의 제 1차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 이후의 변화에 대해 다루었다. 2009년에 “꽃, 총, 그리고 자전거 위의 여성: 북한 여성인권 실태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에는, 우리는 국제사회에 우리의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서울과 제네바에서 브리핑을 가졌다. 세 보고서는 모두 차별 문제 및 해결되지 않는 여성 폭력 문제를 주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2009년도와 2014년도에는 코넥타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브라질 정부가 북한에게 제안할 권고안의 초안을 작성했다.

2014년도의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 전에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한에서 입법은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여성법과 4년 전에 발간된 1차 보고서 이후 향상이 거의 안되고 있는 여성의 권리에 대해 분석하는 보고서를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또한 장애인에 대한 처우 및 종종 간과되며 미해결 상태인 북한 정부에 의한 남한 주민 납치 문제도 다루었다. “인권위원회 결의안 5/1의 부속서 단락 15(b)와 위원회 결의안 16/21 부속서 단락 5에 따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준비한 요

약 보고서”를 보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제출 내용에 상당히 의존하여 보고서를 작성했음을 알 수 있다. 인권고등판무관실은 북한의 인권에 관한 국제적 의무 이행에 관계된 보고서 섹션에서 북한이 여성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에 대한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우려뿐만 아니라 법이 상당히 모호하고, 관련 정의도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음을 비난하는 내용도 인용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여성 폭력에 대한 개선 노력의 부족과 북한이 그런 폭력을 금지하는 별도의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결론도 인용되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몇몇 외교 사절단을 만나 북한의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 중 그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2014년 4월, 보고서의 저자는 제네바 주재의 NGO 국가별 인권 상황 검토 인포(UPR Info)가 주관한 정부 대상 공식 브리핑에 참석했다. 해당 브리핑에서는 공식적인 정기 검토 세션 전에 대략 50여개국의 대표단이 북한 상황 검토에 대한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권고안을 청취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 해당 국가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일부 권고안 중 여성의 지위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권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행 또는 여성 인신매매의 정의도 다루는 여성 폭력에 관한 법안이 빠르게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것. 해당 법안은 희생자에 대한 지원 체제 및 가정 폭력에 관한 경찰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폭행 저지를 위한 완전한 정책에 이어 제정되어야 하며, 국경을 넘어 본국으로 송환된 여성들이 대다수인 수용소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09년과 2014년도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에서 많은 회원국들은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성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권고안	권고 국가	북한의 답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
여성 폭력 관련			
부부 간 강간 및 교화소 내 강간에 적용되는 강간의 정의 포함, 여성 폭력을 방지하는 국내법 제정	캐나다	이해 완료	2014
강제 낙태 시행 중지	캐나다	이해 완료	2014

권고안	권고 국가	북한의 답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
<u>피해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수립하여 여성 폭력 방지법에 따라 처벌</u>	칠레	승인	2014
폭력 행위 및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특히 법 집행 및 기타 권력 기관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조사 및 알맞은 시기에 기소하여 처벌을 받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 및 아동이 구금된 상태에서 성적 학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성과 아동에 대한 특별 주의 필요.	에콰도르	이해 완료	2014
<u>여성 차별 및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수립</u>	프랑스	승인	2014
<u>여성 수감자에 대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 즉시 수립</u>	아일랜드	이해 완료	2014
<u>아동 및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취함</u>	브라질	이해 완료	2010
<u>여성 폭력을 징벌하기 위한 구체적 법안 제정 및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제 구축</u>	칠레	이해 완료	2010
<u>대중 인식 고취 캠페인 증대 포함, 인신매매 및 여성 폭력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조치 수립</u>	말레이시아	이해 완료	2010
구금 시설에서의 고문 및 학대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규제 이행 및 여성 범죄자들을 남성과 별도로 구금시켜 여성 교도관이 지키도록 함.	미국	이해 완료	2010
여성 폭력에 대한 특별 보좌관 및 고문에 대한 특별 보좌관을 초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권고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미국	이해 완료	2010
<u>여성에게 폭력을 가한 개인에 대한 기소를 허용하며, 가정 폭력 포함 여성에 대한 폭력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안 통과</u>	미국	이해 완료	2010

* UPR Info 사이트에서 제공한 정보 기반

결론적으로 유엔에서 그리고 타국과의 관계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NGO들은 유엔에서의 북한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활동에는 북한의 성명 및 유엔 제출 자료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감독 및 타국 정부, 특히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국가 정부와의 정례 회의가 포함된다. 또한 동일한 주제에 대한 독립적 정보를 양산하면서 북한이 제출하는 정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인권시민연합의 “브리핑 보고서” 시리즈는 그 내용이 매우 간명하기 때문에 2009년 이후에 많은 정부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어 왔다. 그러나 북한인권시민연합이 그런 보고서를 적극적 활동을 펼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보고

서는 그저 책장 위에서 먼지에 파묻혀 있었을 것이다.

비록 북한이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해도 국제사회 및 NGO들은 다양한 포럼에서 위원회의 언급 및 권고안을 주된 국제 표준으로 간주하여 북한 내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야 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는 첫 번째 검토에서 북한이 스스로 2조의 (f) 단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을 큰 문제로 파악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본 조항은 협약의 핵심이며, 해당 단락은 각국이 “입법 포함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여성 차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기존 법, 규제,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철폐”를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스스로는 실제로 차별 철폐를 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단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여기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하는 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상당히 비논리적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러한 유보적인 태도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들이 분명히 있다. 성차별은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에 인권법을 준수하는 국가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채택한 새로운 법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0년 12월, 북한은 1948 성평등법 이후에 그런 법안 중 처음으로 여성 권리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은 아동권리법과 함께 제정되었고, 제정 시기는 많은 측면에서 양 법안이 2009년 12월에 있었던 1차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뿐만 아니라 여성차별철폐협약 검토 및 아동권리위원회 검토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많은 국가들은 해당 법안 내용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북한의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인권법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조장하고 있어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의 신규 여성 권리법에는 여성 차별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여성에 대한 성폭행 또는 폭력에 대한 규정도 없다. 오히려 차별적인 개념을 더욱 심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에 관한 19조에서는 “대학교 또는 직업 학교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특별 노동부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의 채용 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되거나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노동에 관한 28조에는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업 또는 부서를 제외한 기관, 법인 연합 및 조직은 여성이라는 이유, 결혼, 임신 및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고용하지 않거나 그들에게 제한을 둘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교육 또는 직업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임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히 있다. 국제사회는 그러한 법안이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만약 그런 법안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면, 실제로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효성 있는 활동이란 NGO의 언급, 보고서 및 권고안이 유엔에서 발표하는 타국 정부 또는 전문가들을 통해 북한 정부에게 직접 전달되는 경우를 말한다. 인권 부문 NGO와 북한 정부간에는 대부분 그런 형태로만 소통이 가능하다. 비록 이런 의사소통이 간접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NGO, 유엔, 그리고 유엔 회원국 간의 연계를 통해 규모가 작은 NGO라도 유엔 및 기타 정부의 의제에서 인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북한여성인권

▣ 백범석 (경희대학교 교수)

1. 현황과 중요성

- 일반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이들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45-55%임. 최근 유럽 난민사태의 경우 유엔난민기구는 그리스에 도착하는 난민들의 60%가 여성과 아동이라고 보고함.
- 한편 일련의 연구보고서에 의거한 입국연도별 탈북자 현황을 보면 대략 여성비율은 2000년대를 지나 70% (최근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 이는 여성의 관점에서 탈북 난민과 북한인권문제를 연구하고 관련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지금까지 탈북 난민의 문제를 여성인권보호차원에서 접근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음. 주로 국제법적 차원에서 중국내 탈북여성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안으로 난민지위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다루는 연구들에 등장함. (이영선, 구혜완, 한인영, '학술논문분석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특수성', 통일문제연구 제56호, 2011 참조).

2. 기존 담론

- 조정현은 유엔난민기구를 통한 탈북자의 보호가능성에 대한 법적 쟁점을 논함. 유엔난

민기구와 중국간에 체결된 1995년 특별협정을 분석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적용의 한계를 적시. 반면 유엔 헌장상 인권기구, 특히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진정절차 및 UPR을 통한 보호가능성을 확인함. (조정현, '국제기구를 통한 탈북자 보호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참조)

- 강효백은 재중탈북여성의 법적지위에 관한 중국법제를 연구하면서 실제 난민지위 인정을 중국 정부에 요구하는 국제법적 접근이나 외교적 압력의 방식은 현실성과 실효성이 낮음을 지적. 이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입장을 변화시키려는 접근방식을 지양하고, 차라리 중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및 이들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에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공식적인 중국법제를 통한 인권 보호에 주목함. 즉 중국 국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탈북여성들에 대한 법집행과 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제시. 결론적으로 한중 양국간 법률 공조체제 구축을 대안으로 주장. (강효백, '사실혼 관계의 재중탈북여성 및 그 자녀의 법적지위에 관한 중국법제', 경희법학 제44권 제3호, 2009 참조)
- 민지원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 규정된 박해의 근거에 성별에 의한 박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른 탈북여성인권문제 특히 난민지위인정의 어려움을 잘 설명하고 있음. 필자는 난민결정기준으로서의 '젠더'박해를 주장하면서 강제송환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성고문 및 강제낙태 등을 예로 들. 탈북여성에 대한 처벌에 임신과 결혼여부 등 재생산능력이나 북한 사회 내부의 정절이데올로기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젠더'박해라는 개념을 끌어냄. (민지원, '난민자격 결정기준으로서의 젠더박해: 북한여성의 난민자격 가능성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20집 2003 참조)

3. 난민의 지위와 여성인권

- 난민지위협약 제1조는 박해의 5가지 형태를 제시함: "...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해당 조항은 여성이기에 특별히 받을 수 있는 박해에 대해서는 규정

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을 정의함에 있어 젠더(성)에 따른 박해의 경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해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음. 즉 젠더(성)에 따라 그 박해의 내용과 근거 및 난민보호의 방법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을 인식한 것. 아울러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여성이 자국으로부터 홀로 탈출하는 경우, 그 과정 가운데 성폭력, 강제결혼 및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강조함.

*UNHCR (1991)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Refugee Women 난민여성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UNHCR (1995) Sexual Violence Against Refugees: Guidelines on Prevention and Response 난민에 대한 성폭력 예방과 대응에 관한 가이드라인

*UNHCR (2002) Guidelines on International Protection No. 1: Gender-Related Persecution within the context of Article 1A(2) of the 1951 Convention and/or its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UNHCR (2002) Guidelines on International Protection No. 2: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UNHCR (2006) Guidelines on International Protection No. 7: The Application of Article 1A(2) of the 1951 Convention and/or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to Victims of Trafficking and Persons at Risk of Being Trafficked

*UNHCR (2008) Handbook for the Protection of Women and Girls

- 서구 국가들의 경우 젠더(성)에 따른 박해를 인정한 판결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원칙에 따르기보다는 판사재량인 경우가 아직은 대다수임.

*RB (Canada) (1993) Guidelines on Women Refugee Claimants Fearing Gender-Related Persecution

*INS, United States (1995) Considerations for Asylum Officers Adjudicating Asylum Claims From Women

*DIMA (Australia) (1996) Guidelines on Gender Issues for Decision Makers

- 여성인권적 측면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데 예는 그 심사절차상 및 증거에 근거한 장애점들이 있음. 예를 들어 성폭력과 성고문 등의 경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의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개인적인 내지 문화적인 문제로 취급할 여지가 많음. 설사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난민심사관 앞에서 직접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자신에게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다시 꺼내기 힘든 경우가 많음. 심사관이 남자일 경우 더욱 그러함. 한편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particular social group)으로 여성이 인정받으려면 개별 국가 내에서 성에 기초한 박해가 만연해야 할 터인데 (난민여성 보호와 관한 가이드라인 등은 이러한 경우를 제시함) 증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여성이 특정사회집단으로 인정받을 경우는 실제 많지 않음.
- 본국을 떠날 때에는 난민이 아니었지만 이후 본국에서 발생할 상황 때문에 난민의 지위를 인정되어야 할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월경행위에 따른 가중처벌).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부수적인 인권침해가 예상된다면 난민 지위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음.
- 여성인권적 측면에서의 난민의 지위를 폭넓게 인정하고자 하는 논의들은 구유고전범재판소 및 르완다전범재판소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국제형사법의 발달과도 맥을 같이 함.

4. 난민의 지위와 탈북여성

-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는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특정 집단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음. 사회 전반에 걸친 여성에 대한 차별(paras. 300-320, 344-345, 350-353 등)과 여성에 대한 폭력(paras. 415-422, 424-434, 455-471, 491, 809, 1054-1056, 1105-1107)에 대해 상세히 기술함. 더 나아가 탈북여성들의 경우, 임신한 채로 강제송환된 탈북 여성들이 강제로 낙태되거나 강제송환된 여성이 낳은 영아들이

살해되는 사례, 북한을 떠나 중국 남성들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북한 여성들에 대한 처벌, 중국에서의 인신매매, 강제결혼, 성매매 등의 사례를 제시.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역시 북한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를 포함하여 탈북자 처벌 및 인신매매 문제를 대해서 다루고 있음.

- 관련하여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탈북한 북한여성들이 월경 과정에서 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하여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어려움. 그러나 유엔난민기구 등의 최근 논의를 보면, 탈북 과정에서 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난민으로서 새롭게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음. 탈북 이후 다시 북으로 강제송환 시 가중처벌이 예상된다면 이 역시 난민 지위를 인정할 사유로써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물론 “녀성권리보장법”(2010) 등을 보면 2000년 이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의 권고의견을 반영하여 북한 정부가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하고,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되고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특히 임신 탈북 여성의 구류, 구속처분과 형집행정지와 관련하여 출산 전 3개월, 출산후 7개월에 해당하지 않는 임신부의 경우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오히려 형집행정과정에서 임신여성에게 노동을 시키거나 구타하여 유산을 유도하거나 낙태시키는 경우들이 발생하며, 영아유기 사례 등도 보고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6 참조)
- 중국남성과 결혼한 탈북여성이 가정폭력을 피해 다시 탈출한 경우에는 박해라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해당 탈북여성들의 지위가 불안정한 측면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경우 역시 난민 지위를 인정할 사유로써 고려할 필요가 있음. 유럽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난민지위를 인정한 사례들이 다수 있음.
- 오늘날 여성난민의 보호는 국제사회에서 주된 관심사 중 하나임. 탈북여성들의 인권문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고려해야 함. 즉 탈북여성의 실질적 인권보호를 위



해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을 새로운 관점에서 살피고 대안적 접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관련 국내외 NGO들간의 연대 및 국제기구, 여성단체 등과의 폭넓은 협력, 그리고 학계에서의 다양한 담론들이 필요함.

고문방지협약과 탈북 여성 인권 보호

Ⅰ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1. 제가 일하는 공익법센터 어필은 난민, 인신매매 피해자, 무국적자, 구금된 이주자와 해외한국기업에 의해서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 등 취약한 이주자와 외국인들을 위한 옹호활동을 하는 공익변호사 단체입니다. 멘테이트가 이렇게 다섯 가지로 한정되어 있으니, 과거 한국에서 무국적이 문제가 되었던 탈북자를 지원한 것을 말고는 탈북자들과 일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2. 그런데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 특히 탈북 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정이 달라져서 저희가 멘테이트로 하고 있는 난민, 인신매매 피해자, 무국적자 이슈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강제송환이 되어서는 안되는 난민 내지 torture claimants 이고, 탈북자들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은 중국에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고, 인신매매 되어서 중국 사람들과 강제 결혼 한 탈북 여성들이 낳은 자녀는 '호구'에 올리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무국적 아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3. 중국 정부는 지난 20 여년 동안 수 만명의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해왔습니다. 중국정부는 일관되게 탈북자들은 경제적인 이주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비준한 난민협약상 보호를 받는 난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북한을 떠난 동기가 어떠한지(경제적인 동기라고 하더라도) 북한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고, 박해의 원인은 국적국을 떠날 때가 아니라 돌아가려고 할 때를 기준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이들은 소위 현지 체재중 난민(refugee sur place)이라고 봐야 합니다.

4.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난민지위 여부와 상관 없이, 탈북자들은 북한에 돌아가면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내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난 경우,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자로 장기간의 구금, 강제노동 등의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중국에 있을 당시에 기독교를 접했거나 한국 사람을 만난 경우에는 그 처벌의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난민지위를 가지느냐 하는 논쟁과 상관 없이,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은 고문방지협약 제3 조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5. 통계에 따르면 탈북자 가운데 70%가 여성이고, 여성들의 70~80%가 인신매매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인신매매 된 탈북여성들은 강제노동을 하거나,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강제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성매매의 경우에는 브로텔에서 성을 팔거나, 온라인 섹스 사이트에서 채팅을 하거나, 노래방 등에서 접대를 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결혼의 경우에는 브로커를 통해 시골에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중국 남자들에게 팔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중국정부가 2010년 2월 8일 비준한 유엔인신매매 의정서, 소위 팔레르모 의정서에 따르면, 체약국은 인신매매자를 처벌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신매매를 예방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신매매를 당한 탈북여성들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정책과 관행 때문에 다른 인신매매 피해자들 보다 더 취약한 지위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 여성이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서도 계속 북한으로 강제송환 해왔고, 중국내 탈북자들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인신매매자들을 처벌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형량으로만 죄를 물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신매매된 탈북 여성들은 강제송환이 두려워 자신이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사실을 당국에 알릴 수가 없고, 인신매매자들은 이러한 취약성을 이용해서 처벌의 위험 없이 인신매매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문방지위원회의 최종견해(CAT/C/CZE/CO/4-5,2012,para. 19)에서도 밝혔듯이,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심각한 형태의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폭력을 당할 수 밖에 없으므로…인신매매는 고문이나, 최소한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입법, 사법, 행정적으로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인신매매를 당했을 경우 보호하고, 인신매매자를 처벌하는데 실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탈북여성들의 강제송환함으로 인해 탈북여성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더 취약하게 만들었으므로, 고문방지협약 제 2 조와 제 1 조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최근 연구자들에 따르면 탈북여성들이 낳은 아동들이 중국에 1~5 만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아동들은 엄격히 말하면 법적으로 무국적자는 아닙니다. 중국 국적법에 의할 때, 부모의 한 명이 중국 국적이면 그 자녀는 중국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내의 한 자녀 정책과 탈북여성들에 대한 강제송환 정책 내지 관행이 맞물려, 탈북 여성들(많은 경우 강제결혼을 한 탈북 여성들)이 낳은 자녀들이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인 ‘호구 hukou’에 등록이 되지 않아 사실상 무국적자가 됩니다. 최근에는 예전 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중국인 아버지와 탈북자인 여성 사이에 생긴 자녀를 호구에 등록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인 아버지가 자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탈북자인 어머니가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되었다는 증인의 진술을 당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8. 중국에서 사실상 무국적자들은 교육, 의료서비스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무국적상태 자체가 개인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무국적자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범죄처럼 느끼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국적이 없어, 출생 등록이 안되어 있고, 신분증이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따라서 무국적 상태는 정부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거나,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사실상 무국적자인 탈북여성들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문방지협약 제 2 조 및 제 1 조에 위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9. 앞서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는 것과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는 것,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자인 탈북여성들이 낳은 자녀들이 사실상 무국적자가 되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강제송환되기 때문에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은 중국 당국에 도움을 구할 수 없습니다. 강제결혼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여성들은 중국 남자와 사이에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아동들 역시 부분적으로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정책과 관행 때문에 사실상 무국적 아동이 됩니다.

10. 제가 일하는 어필에서는 2015년 11월 중국 정부가 고문방지협약 이행과 관련해 심의를 받는 것을 계기로 위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쟁점목록 작성을 위한 보고서를 2015년 3월 유엔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위 보고서의 제목은 ‘송환되거나, 인신매매되거나, 무국적이 되거나: 중국 내 탈북자가 사는 방식’인데, 부록에서 그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열린 심의에 참석해서 위원들이 위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중국 정부 대표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로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최종견해가 나왔습니다. 위 최종 권고에서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권고가 있었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인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말라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신매매된 탈북자들이 낳은 자녀들의 무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11. 2015년 12월 고문방지위원회의 중국 정부에 대한 권고 중에 탈북자와 관계된 부분(당연히 탈북 여성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46. 위원회는 2012년의 출입국 행정법의 적용을 환영하면서도 1 난민관련 법과 행정의 중국 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UNHCR이 난민인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오직 경제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다는 이유로 탈북자들에 대해 전국에 걸쳐 엄격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당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이에 관련하여 위원회는 UN이 제공한 100개가 넘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받은 바 있고, 이 증언들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 조직적인 고문과 학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정보에 근거해 볼 때 심의중에 위원회가 탈북자들이 UNHCR을 통한 난민인정절차에 접근이 가능하지 여부에 대해 질문했을 때, 중국 당국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47. 중국 당국은, (a) 고문방지협약 제 3 조가 규정하고 있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국내법에 완전히 통합시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미등록 이주민과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국경을 넘어온 복지들에 대해 UNHCR 이 막힘 없이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난민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 위원회는 중국당국이 귀환 시 고문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추방하거나, 돌려보내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바이다. 48. 고문방지협약 제 3 조 아래 추정되는 의무의 적용가능성을 가늠해보기 위해서, 중국 당국은 각 케이스들을 볼 때, 도착국가에서의 고문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들까지 철저히 따져보아야 한다, 송환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UNHCR 이 시행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송환 이후 모니터링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지원해야 한다.

12.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며 탈북여성 인권보호와 관련해서 이제까지는 중국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한국 정부의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탈북자들이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나 독일 등에 가면 난민으로 인정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례의 경향은 탈북자들은 한국으로 가면 국민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2중 국적자리는 이유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탈북자들은 난민으로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3 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에 오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물론 탈북 여성들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외공관을 통해 일정한 역할, 특히 빨리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에 입국한 후에는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여러 조치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여성들의 상당수가 이미 강제송환되었다가 다시 탈출을 하였거나 인신매매 피해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고문피해자이며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이렇나 탈북 여성들에 대해 정신 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해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정부 역시 고문방지협약 위반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 록>

강제추방 및 인신매매, 혹은 무국적 상태: 중국 내 탈북자들의 생활 방식

배경 및 토대

1. 중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1988년 10월 4일) 당사국으로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제1조 및 제2.1조).
2. 국제법상 강행규범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의무는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의해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고문방지위원회는 “인신매매와 고문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최종견해에서 인신매매를 언급하며” 인신매매 피해자는 “가혹한 형태의 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고문 및 적어도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4. 무국적자도 유사한 비인도적 환경에서 고통 당하고 있다. 무국적 상태는 교육이나 의료 보호, 혹은 법적 고용이 없는 삶을 의미한다. 이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며 전망이나 희망이 없는 삶이다.” 이러한 상황은 틀림없이 고문의 형태에 해당하며 고문방지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무국적자들의 “특별히 취약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5.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들을 강제로 송환하고, 인신매매되는 탈북여성 및 탈북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의 무국적 자녀들을 방치하여 고문방지협약에 보장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이러한 위반 사례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관련 탈북자 및 자녀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 위반

탈북자 강제송환

6. 많은 북한인들이 중국으로 건너가는 이유는 정치 및 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이거나, 경제적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까지 다양하다. 이들의 불법 상태로 인해 탈북자의 수치를 가늠하는 일이 매우 어렵긴 하지만, 학자 및 운동가들은 현재 최소 15,000 여 명에 달한다고 의견을 모은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추정치에서 상당히 감소한 수치인데,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 이미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으며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탈북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7. 북한에서는 허가 없이 국가를 이탈한 주민들은 어린 아이들까지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북한으로 돌아가면 극심한 처벌을 받게 된다. 북한 형법 제 63 조에 따라 허가 없이 국가를 이탈한 경우 국가 기밀을 팔아 넘기는 것과 같은 기타 범죄와 함께 반역죄로 간주되어 강제 노동을 수반하는 장기 징역이나 사형에까지 이르는 처벌을 받게 된다. 계속되는 북한 감옥의 고통에 대한 증언은 탈북자들의 강제 노동, 고문, 심지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 중국인 남성들의 북한여성들에 대한 강제 낙태 및 영유아살해 관련 사례도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되어 투옥되자마자 발생하게 된다.

8.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북한과 체결한 국내 이민법 및 협정에 따라 수만 명의 탈북자들을 강제로 송환했다. 최근 사례들을 언급하자면, 중국은 2013년 5월 라오스에서 9명의 탈북 고아들을 받은 후 북한의 요청에 따라 그들을 강제 송환했다. 2012년 2월, 중국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탈북자 30여 명을 억류하여 강제 송환했다. 중국 정부는 “불법으로 중국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은 경제적인 이민자들로,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조치를 옹호했다. 그러나 이들이 강제송환되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고문 및 박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탈북자는 난민(혹은 현

장난민)으로 간주되어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1951년에 체결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국제사회 및 인권 단체는 2013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포함하여 다양한 경로로 중국의 조치를 비난했지만 중국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또한 중국 당국은 UN 난민 고등판무관으로 하여금 방해 받지 않고 탈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도운 사람들을 체포하고 고문했다.

9. 요약하면, 중국은 탈북자들을 강제로 송환함으로써 고문방지협약 제 3조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

북한여성 인신매매

10. 북한의 여성 및 소녀의 상당수가 강제 또는 사기에 의해서 중국으로 매매되고 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불법으로 국경을 건너는 부녀자들은 만 명 가량으로 추산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인신매매에 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탈북자의 70%가 여성”으로 추산되며 이러한 탈북 여성의 70~90%가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 정부가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탈북을 돕는 자선 단체 및 지하 조직을 단속함에 따라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되는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다. 도움이 절실한 이들은 인신매매 위험을 무릅쓰고도 밀입국 주선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1. 일부 탈북자들은 국경을 건넌 직후, 또는 건너면서 강제로 납치된다. 또한 도움을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준다는 거짓 약속에 현혹되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인신매매 희생자들은 강제 노동, 강제 사실상 결혼, 성적 착취, 다른 형태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에 노출되어 있다. 인신매매된 부녀자들의 경우, 중국 남성에 의한 매춘 및 강제 결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실상 결혼 및 성적 착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한 자녀 정책과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왜곡된 성비가 이와 같은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심지어 마을마

다 지역 수요를 조사하는 브로커가 상주하여 해당 지역으로 여성들을 보낸다. 여성들이 당하는 성적 착취의 형태는 성매매 업소의 매춘,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의 화상 채팅, 나이트클럽 및 가라오케바 접대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해당 여성들의 이동은 매우 제한적이며 인신매매 피해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잔혹행위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히게 되면 거의 죽음에 이르도록 구타 당한다고 한다.

12. 인신매매 피해자들 가운데서도 탈북 여성들을 다른 국가 피해자들에 비해 특히 취약한 상태이다. 이들은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정부나 당국, 심지어 민간인에게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해서 사면이 주어지지 않는다. 중국에 있는 많은 탈북 여성이 강제로 중국에 오게 된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탈북자들을 계속해서 강제송환시키고 있다. 피해자들이 송환되면 다른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가혹한 박해를 받게 된다. 인신매매범들은 착취를 참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의를 찾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인 탈북자들의 타고난 취약점을 이용한다.
13. 면책 또한 중국 정부가 탈북여성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의 법에 의하면, 인신매매는 심각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북한여성과 관련한 경우의 처벌은 보통 벌금형에 제한되고 해당 사항은 묵인된다. 이러한 사례가 공개되면 중국 내 탈북자 존재가 크게 주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피하려 한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탈북자에 의해 제기된 공식적인 경찰 보고 문서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 결과 어떠한 가해자도 처벌받지 않고, 어느 피해자도 구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4. 중국은 관할 구역 내에 고문 수준에 달하는 탈북여성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혹은 기타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탈북 여성들의 사실상 무국적 자녀

15. 탈북자와 연관된 또 다른 문제는 탈북인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무국적 자녀이다. 학자들은 탈북인 어머니를 둔 자녀가 1만 명에서 5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해당 자녀들은 모친의 불법 신분으로 인해 사실상 무국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엄밀히 말하면 중국 국적법에 따라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 중 한 명이 자국민일 경우 중국 국적을 부여 받게 된다. 하지만 탈북 여성에 처해진 위험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호구제, 즉 호적 등록 제도에 기재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6. 법적으로 탈북자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의 자녀를 호구제에 등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이는 중국인 부친이 탈북인 아내가 체포되었고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증인들의 증언을 포함한 법적 증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가족들은 자녀들을 사실상 호구제에 등록시키지 않는 채 무국적 상태로 내버려 두거나, 자녀를 호구제에 등록하기 위해 가족을 해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결국 자녀를 무국적 고아 상태로 유기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17. “무국적 상태는 개인 인권의 심각한 위반 사항이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라고 느끼게 만든다.” 무국적자는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정의에 호소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법적 유령”으로 묘사될 수 있다. 이러한 상태는 고문 수준에 달하며 정부로부터의 보호 결핍으로 인하여 평생의 정신적 고통 및 높은 확률의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연약한 어린이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호구제에 등록되지 않는 아이들은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고, 의료 및 보건 서비스에서 제외되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
18. 따라서 사실상 무국적 자녀들의 고통을 방치함으로써 중국 정부는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결론

19.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고문에 노출되어 있는 출신 국가로 강제송환함에 따라 고문방지협약 제 3 조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위반은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중국 당국의 보호를 구할 수 없는 탈북여성들을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태로 내몰고 있다. 인신매매된 탈북여성들의 대다수가 성적 착취의 피해자가 되며 브로커들에 의해 가임 여성 및 상주 노동력이 필요한 중국 남성들에게 신부로 팔려 나가고 있다. 해당 여성들과 중국인 남성들 사이에서 난 자녀들은 사실상 무국적 상태가 되어 아동들의 안녕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양산한다. 인신매매와 무국적 상태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하며 이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탈북여성 및 이들의 사실상 무국적 자녀를 보호하지 못하고 심지어 인신매매 및 무국적 사례를 증가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고문방지협약의 제 1 조 및 제 2.1 조를 위반하고 있다.

20.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위반과 북한여성 인신매매 및 무국적 자녀 문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3세션 : 북한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및 역할

- ① 북한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
Patricia Goedde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②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언론의 역할
Giampaolo Pioli (유엔기자협회장)
- ③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EU의 역할(북한여성을 중심으로)
John Sagar (주한 EU대표부 1등서기관)
- ④ 북한여성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여성NGO의 역할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 ⑤ 국제 연대를 활용한 북한인권 운동 전략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북한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

▮ Patricia Goedde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요

1. 전 지구적 과제인 국제법에 따른 여성 인권 신장
 - 국제 인권 법규
 - 베이징 선언 +20
 -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2.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 북한 조약 보고서
3. 법 체계를 통해 북한 여성의 인권을 전 세계 개발 목표에 맞추어 신장

국제법에 따른 여성 인권 신장

- UN 헌장(1945)
 -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 세계인권선언(1948)
- 여성차별철폐선언(1967)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76)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76)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1979)

성차별 문제를 다루는 기타 인권 관련 조약

- 아동권리협약(제 2조)
-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제 7조)
- 장애인권리협약(제 6조)에서는 장애가 있는 여성이 여러 가지 차별에 직면할 수 있음을 공인함.
- 인종차별철폐협약 또한 인종차별의 성차별적인 측면에 대해 언급함.
- 고문방지위원회도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을 다룸.

연대표

- 1995 제 4회 세계 여성 회의, 베이징
- 2000 UN 새천년개발목표
(8대 목표 중 #3 : 남녀 평등과 여성 권익 보장)
- 2015 베이징 선언 +20
- 2016 UN 지속가능개발목표
(17대 목표 중 #5 :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

베이징 선언 +20

-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12대 영역에 집중:
 - 1) 여성과 빈곤
 - 2) 여성 대상 교육 및 훈련
 - 3) 여성과 건강
 - 4) 여성 폭력
 - 5) 여성과 무력 분쟁
 - 6) 여성과 경제
 - 7) 권력이 있는 여성과 의사결정
 - 8) 여성 발전을 위한 제도
 - 9) 여성의 인권
 - 10) 여성과 미디어
 - 11) 여성과 환경
 - 12) 여아

2015년 이후 베이징 선언 우선 과제

- 규범과 이행, 그리고 약속과 실행 간 계속되는 격차
- 다양한 형태의 차별 및 불평등에 대한 관심 부족
- 차별적인 사회 규범, 성 고정관념,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간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지속
- 양성 평등에 대한 보수적, 극단적 저항
- 무력한 경제 상황
- 양성 평등을 달성하기에 불충분한 자원
- 여성의 낮은 참여 수준
- 강력한 책임 기제 부재
- 진척도 추적에는 제한적인 데이터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은, 최다국 비준 국제 인권 협약 중 하나로 189개 국가가 비준함.
- 그러나 가장 많은 비준 유보 국가가 있음.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핵심 원칙:
 - 평등의 원칙
 - 무차별의 원칙
 - 국가 의무의 원칙

CEDAW – 차별 철폐 영역

- 성 역할 및 고정관념, 그리고 여성에게 해로운 관행
- 성 매매
- 정치적 및 공적 생활
- 국제적 차원에서의 참여
- 국적
- 교육
- 고용
- 보건 및 가족 계획
- 경제 및 사회적 혜택
- 시골 지역의 여성
- 법 앞에서의 평등
- 결혼 및 가족 관계

CEDAW – 북한 보고서 북한의 여성 및 법

법률

- 북한 사회주의 헌법
- 북한 남녀 평등 법(1946)
- 북한 여성 인권 법(2011)

법조인

- 판사 중 10%가 여성 (2002년도 CEDAW 보고서)
- 판사 및 변호사 중 1.9%가 여성 (2016년도 CEDAW 보고서)

(북한) 여성을 위한 “사법 접근권”

- 법률, 법
- 국회의원
- 법원
- 법적인 대표
- 성매매 & 인신매매
- 강간/성폭행/성희롱
- 원치 않은 임신/낙태/STDs
- 보건 서비스, 정신 건강, 위험 센터
- 가정 폭력
- 자원 / 뇌물/ 부패 (경제적 침해, 성적 강요)
- 억류 시 권리 박탈 (성폭력, 굴욕적 대우)
- 남성의 감독 (군대, 정치)
- 법적 제재

북한 여성의 인권을 전 세계 개발 목표에 맞추어 신장

- 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 이행 및 집행
- 조약 보고서 내 성불평등 및 불평등 내용 파악
- 엘리트 층과 비 도시지역 대표성 구분
- 보다 많은 통계 데이터 필요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및 기타 조약의 지속적 이행
- 법적 대리(representation), 접근 및 구제(remedies)에 보다 집중
-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정부에 책임을 물음
- 교육 및 법적 교류 장려, 중립적 사법권 내 국제적인 모범 사례에 노출될 수 있도록 북한의 법학자 초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언론의 역할

Ⅰ Giampaolo Pioli (유엔기자협회장)

신사 숙녀 여러분,

북한 여성의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를 들어보니 인권 보호는 정보 자유 보호의 문제를 먼저 거쳐야 함이 더 명확해집니다.

며칠 전 우리는 유엔에서 세계 언론 자유의 날(World Press Freedom Day)을 축하했습니다. 오늘 북한에서 단지 몇 마일 떨어진 이 곳에서 여성과 여성의 인권 보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마치 UN에서 논의했던 그 주제를 다시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유엔 기자 협회 회장이자 저널리스트로서, 저는 언론의 자유, 기본인권,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논의는 표현의 자유가 세계에서 가장 제한된 국가인 북한의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언론인보호위원회(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에 따르면, 북한은 사실, 에리트리아(Eritrea)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검열이 가장 심한 국가입니다.

슬프게도 문제는 소수의 테러 지원국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살, 부상 또는 투옥된 저널리스트의 수는 전세계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진민주주의 국가, 개발 도상국, 강대국, 아프리카, 중동, 유럽, 아시아, 중앙 아메리카의 작은 국가들 (모두), 저널리스트나 일반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787명의 저널리스트가 살해되었고, 이 중 72명은 2015년, 그리고 올해는 현재까지 10명이 더 살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기자 협회는 35개 이상의 언론

자유 그룹과 함께, UN 총회에서 “국경 없는 기자회견”의 제안에 따라 저널리스트의 안전을 위해 사무총장의 “특별 대리인”을 지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은 이 직책에 정치적 영향력(weight), 신속한 조치를 위한 역량, 저널리스트의 안전을 위해 UN의 노력을 조율할 수 있는 정통성을 부여하도록 유엔과 회원국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업무 수행 중에 매년 사망하는 저널리스트의 수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한 장의 종이로만 남고 시행되지 않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보다는, 유엔과 회원국은 가능한 신속히 “저널리스트의 보호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저널리스트들이 신념과 희망을 갖고 더 안전하다고 느끼며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전쟁 지역, 그리고 다른 모든 위험지역에 있는 저널리스트를 위해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 권리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과장 선전에 대항할 수도, 폭력적인 극단주의를 멈출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 투명성, 포함을 논의하는 대규모 컨퍼런스를 조직하는 데 있어 매우 효율적이고 관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국의 저널리스트를 투옥시키는 국가들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검열되지 않은 뉴스를 실시간으로 읽을 권리는 어떤 형태의 정부에서든 시민 공존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간주됩니다. 21세기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모든 국가는 교육, 건강, 일, 자유와 함께 이러한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EU의 역할 (북한여성을 중심으로)

Ⅰ John Sagar (주한 EU대표부 1등서기관)

북한여성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여성NGO의 역할

Ⅰ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1. 서론

북한여성의 인권문제는 1990년대 중반이후 식량난에 의한 대량 탈북과정에서 여성들이 당한 인신매매, 성폭력 및 매매혼과 같은 성적 학대가 폭로되면서 국제사회에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여성문제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령중심의 사회주의의 대가정(大家庭) 사회관과 선군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북한 독재체제는 가부장성과 남성지배체제에 기초한 남녀불평한 사회체제를 결사 옹위할 것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중심의 생활양식과 성역할 분업이 사회규범으로 정당화되고 미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북한여성의 인권문제는 국제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인신매매와 성적 학대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남녀불평등과 성차별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북한여성은 거주 공간에 따라서 3개의 집단으로 분류된다. 북한여성, 재중 및 제3국 탈북여성 그리고 한국에 있는 탈북여성이다. 따라서 북한여성들은 거주 공간에 따라서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여성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첫째, 북한에서 거주하는 여성들은 남성 중심적인 정치경제적 분배체제와 가족주의적 국가관에 의해서 이등국민으로 대우받고 있으며 여성의 종속이 정당화되고 있다. 또한 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에는 생계책임의 전담자로 시장으로 내몰리면서 다양한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를 받고 있다. 둘째, 탈북 하여 중국이나 제3국에서 거주하는 북한여성들은 불법체류자로서 단속과 강제북송의 위험에 처해있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와 매매혼, 성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

다. 또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뒤에는 취조과정에서 성고문,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의 여성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셋째,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는 북한여성들은 인적 자본을 갖추지 못한 열등한 사람, 못살고 적대적인 나라에서 온 소수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홍민, 2010).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여성의 인권문제는 거주공간에 따라 다층적으로 나타나는 차별과 폭력의 문제들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한여성NGO들의 북한여성의 인권개선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주로 탈북여성단체이나 통일관련 단체 혹은 인권관련기관을 중심으로 탈북과정에서의 여성인권유린에 대한 보고서와 증언들이 일부 나오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데에는 북한인권문제의 과잉정치화에 대한 거부감과 남북관계에 대한 우선 고려 등의 요인도 있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국제사회가 북한여성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재중 북한여성들의 인신매매문제나 북한내부에서 여성들이 당한 성적 학대나 착취만을 부각시키는 방식의 문제제기는 탈북 여성을 “성적으로 함부로 다루어진 존재”라는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효성의 측면에서도 북한과 같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부재하고 폐쇄성이 강한 독재국가를 대상으로 북한 바깥에서 특히 한국 내에서 북한여성의 인권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하지만 탈북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북한여성인권에 대한 강력한 요구들이 미약하나마 작은 변화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여성인권개선을 위한 한국여성 즉 남한여성과 탈북여성들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즉 한반도에 사는 남한여성, 북한여성 그리고 탈북여성이라는 세 집단의 역할과 잠재력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연관성 속에서 대안을 찾아보자 한다.

2. 북한여성인권개선과 북한 및 탈북여성의 역할

북한여성인권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체제의 변화이나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바깥에서 북한여성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북한내외에서 가능성과 변화의 물꼬를 찾는 일일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은 북한주민의 대량탈북을 야기 시켰고 비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인 시장의 도입과 확산을 촉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탈북여성들은 북한여성인권 유린 실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시장이 확대되고 사적 소유가 늘어나면서 북한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생활에 있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 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들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북한체제의 잠재적 비판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북한여성들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북한여성인권개선을 위한 탈북여성들의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 여성단체들과의 연대의 필요성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북한여성 : 잠재적 비판세력으로 성장 중¹⁾

2015년 현재의 북한 주민들은 배급경제가 아닌 시장경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북한 전역에 400여개가 넘는 장마당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시장은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북한주민들에게 시장은 생존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여년의 시간을 통해 북한주민들은 시장에 대한 학습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시장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워가고 있다. 또한 계획경제 영역에 있는 당이나 군, 내각 등 권력기관도 시장경제를 통해 잉여를 산출하거나 주민들에 의해 산출된 잉여를 수탈하고 있다. 특히 권력기관들이 갖고 있는 무역 및 상행위 인·허가권은 정경 유착형 빈익빈 부익부구조와 부정부패 및 뇌물상납구조를 양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미약하나마 외부의 새로운 가치와

1) 필자가 2014년과 2015년 각각 탈북여성 5명과 1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들이다. 2014년에는 4-50대 탈북여성을 중심으로 생애사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2015년에는 장마당 여성세대라 할 수 있는 20대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김은주, 「구술로 본 북한여성의 삶 I (2014)」, 「구술로 본 북한여성의 삶 II, 장마당 여성세대의 생활과 의식(2015)」.

정보를 유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를 조장하여 북한정권 및 권력기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북한시장의 중심에 여성이 서 있다. 북한남성들은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교회나 생활총화 등의 제재를 받는데 반해 기혼여성은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그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시장활동을 할 수 있었다. 법적으로도 북한의 장마당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만 50세 이상의 기혼여성에게만 주어져 있다. 북한사회가 기혼여성들에게만 시장참여를 허용한 것은 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도 있겠지만 비사회주의적인 영역인 시장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남성의 참여보다 덜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확대가 북한여성들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과 변화는 지대하다. 첫째는 여성들이 시장경제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은 아버지는 생계에 도우며 되지 않은 직장에 나가 일을 하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장사를 하는 것이다. 남편의 생활비만으로는 가계운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북한여성의 경제활동은 부수입이 아닌 가족의 생계전반을 책임지게 되었다. 즉 북한여성들이 실질적인 가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는 성 역할 고정관념의 변화이다. 가부장적 가치관과 의식이 강한 북한 사회주의체제에서 여성들의 시장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가족 내에서의 부부관계 즉 성 역할에 대한 인식들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는 여성의 몸과 여성성의 도구화이다.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는 필연적으로 여성의 몸과 여성성의 도구화를 초래한다. 남성이 중심이 되는 공적 영역 즉 사회주의 영역은 감시와 통제의 주체로 인식되는 반면 여성이 중심이 되는 사적영역 즉 비사회주의 영역은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여성의 몸에 대한 성적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 스스로도 여성성과 여성다움을 돈을 벌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넷째 장마당 세대라고 호명되는 20대 젊은 여성들은 시장을 통한 삶의 방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장경험이 많은 여성일수록 국가에 대한 기대나 신뢰도는 낮게 나타났다.

특히 장마당 여성세대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199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이들 세대는 연령상으로 현재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에 해당된다. 시장은 장마당 여성세대에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했다. 첫째는 이들은 5-60대와는 달리 배급 경제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가 지정해준 직장은 정치적 탄압을 받지 않기 위한 문서상의 일터일 뿐 실질적인 생계는 국가가 통제하는 시장을 통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시장을 통해 국가가 통제된 바깥세상에 대한 정보와 문화를 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장마당 여성세대의 가치관에 변화를 가져왔다. 한마디로 시장을 믿고 시장에 기대어 살면서 국가에 대한 믿음이 약화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국가는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며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쌓여있다.

장마당 여성세대는 어깨너머로 시장경제를 배운 것이 아니라 시장의 행위자로서 직접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모순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냉철하였다.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북한체제를 보면 다음과 같이 8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국가의 시장에 대한 모순적인 태도이다. 배급을 주지 못해 시장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열심히 일해 부를 축적하는 것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돈이 많다는 이유로 투옥되거나 중국으로 도망을 가게 만드는 모순된 체제라는 인식이다. 둘째 사회주의경제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이다. 국가가 지정한 직장에서 받은 돈으로 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생필품조차도 생산하지 못하는 체제라는 인식이다. 셋째 장마당 여성세대는 부모세대와 다르게 국가에 대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감사함이 없으며 개개인이 자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높다. 넷째 북한체제는 외부 세계와 비교해서 경제적으로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할 자유도 없는 나라이고 게다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면서도 교육마저도 국가가 아닌 부모들이 책임지게 만든 잘못된 나라라는 것이다. 다섯째,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도 인민들은 가난에 허덕여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민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체제라고 생각한다. 여섯째, 김일성·김정일 우상숭배로 인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공허함이나 연민의 감정마저도 가지지 못하게 만든 사회이고, 일곱째, 지금의 북한사회는 자본주의 보다 더 나쁜 사회로 여겨고 있다. 국가의 통제가 너무 심해 위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이다. 또한 법보다 권력이 우선시 되고 사람에게 대한 예의도 없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부패한 사회라는 인

식을 갖고 있다. 여덟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급경제로의 회귀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시장의 폐지는 굶주림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즉 장마당 여성세대는 시장을 믿고 시장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다는 강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 장마당 여성세대는 부모세대와는 달리 자신들을 개인 집단 혹은 트인 집단이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가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안고 있다. 대부분의 장마당 여성세대가 기대어 살고 있는 시장을 억압하는 국가에 대해 불만은 높았지만 그렇다고 국가에 반(反)하는 의식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로 대변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문화와 문물로 개인 집단이 되었지만 국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겉마음과 속마음이라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현실을 숙명이라고 하였다.

시장은 쌀과 돈을 주고 제한적이거나 자유를 향유하게 한다. 반면 국가는 억압과 통제로 죽음의 공포를 이들에게 불어넣고 있다. 시장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국가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고 국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지만 그와 동시에 국가에 대한 두려움은 높아진다. 화폐개혁처럼 언제든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그들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소한 불만의 노출도 폭력과 죽음으로 내몰 수 있기 때문이다. 장마당 여성세대는 시장에 대한 믿음과 국가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위태롭게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국가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시장에 기대어 살면서 그들의 부모세대와는 다른 비사회주의적인 삶을 꿈꾸고 있다.

이처럼 시장의 중심에 서있는 북한여성들 사이에서 시장 활동을 억압하는 권력구조에 대한 강한 비판적 인식들이 높아가고 있다. 비록 공공연하게 드러내 놓고 체제비판을 할 수는 없지만 시장 활동에서 겪게 되는 부패한 권력구조에 대한 비판의식의 형성까지 억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북한사회에서 여성들 특히 장마당 여성세대는 잠재적인 비판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2)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소통확대

탈북 여성과 남한 여성간의 만남과 소통은 여전히 미약하기는 하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음식 만들기, 합창 등 문화를 매개로 하는 모임에서부터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에 대한 대화모임에 이르기까지 탈북 여성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정착과 안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향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류는 남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상호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 유대와 자매애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탈북 여성과 남한 여성단체들 간의 교류 활성화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김은주, 2014). 첫째, 탈북 여성은 북한사회의 변화나 북한주민들의 실제 생활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원이다. 분단 70년 동안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정치경제적 차이 못지않게 사회문화적 및 의식적 차원에서 이질화도 심화되었지만 그 변화의 양상과 깊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 여성들이 전해 주는 정보는 개인적 경험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매우 유용하다. 통일준비는 남북한 여성들의 동질성 회복 못지않게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막연하게 달라졌을 것이라는 추측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들이 북한이탈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다르다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함께 살아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탈북 여성과 남한 여성단체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이질화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공존과 동질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한 여성단체들은 탈북 여성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매애에 기초하여 멘토(mentor)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 입국한 상당수의 탈북 여성들은 과거 북한에서 경험한 생활고와 제3국 체류 중에 당한 인권유린으로 인해 상당히 큰 심적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국내적응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편견은 탈북 주민임을 숨기고 취업을 해야 하고, 자녀양육 및 교육에 있어 혼자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따라서 남한 여성단체들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자매애를 갖고 탈북 여

성들이 남한사회에서 정서적 물질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에 잔존해 있는 성차별적 관행과 문화로 인해 제3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내자의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셋째 남한여성단체는 탈북 여성들의 여성권리의식을 함양시키는 교육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는 성차별이나 여성억압의 원인을 자본주의와 경제적인 문제로 본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폐지는 곧 여성해방으로 인식한다. 바로 이러한 도그마가 사회주의에도 엄연하게 존재하는 여성문제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였다.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문화는 시대와 공간, 체제를 초월한 것으로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와도 정합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왜곡한 결과이다.

게다가 북한은 사회전체를 ‘아버이’ 수령이 영도하는 대(大)가정에 비유하고 북한주민들에게 ‘아버이’ 수령에 대해 충성과 효성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아버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대(大)가정이라는 북한의 사회관은 가부장제 자체에 대한 비판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공사영역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성별분업을 정당화하고 미덕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문제를 은폐시키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북한엔 여성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성문제에 대한 사유와 성찰을 금기시하고 있다. 북한사회의 여성문제에 대한 무사유가 단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식 사회주의 도그마에 근거한 사유불가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거리감은 더 커졌을 것이다.

탈북 여성들이 남한여성들의 높은 권리의식과 여성운동에 대해 한편으론 놀라워하면 서도 다른 한편으론 불편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북한에서의 사회화의 결과일 것이다. 북한여성의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남북한 여성들의 가부장제문화와 여성성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어야 한다.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여성성은 미덕이 아닌 차별의 다른 표현임을 이해시키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한 여성단체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탈북 여성들이 여성권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탈북 여성들은 남한여성들이 이질화된 북한사회문화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3. 북한여성인권개선과 남북여성교류의 의의

남북여성교류는 1991년 1월 동경에서의 첫 만남 이후 25년 동안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만남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지속되어 왔다. 그동안의 남북여성교류는 평화와 통일, 종군위안부문제, 6.15공동실천문제 등 민족적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공통의 민족적 과제를 다루는 남북여성교류일지라도 남북한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성사되지 않은 것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여성인권문제를 남북여성교류의 의제로 상정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제기에 대해 내정간섭이고 주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여성인권개선과 관련해서 남북여성교류를 살피는 것은 분명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북여성교류를 가부장적 체제에 내재해 있는 남녀불평등의 해소를 통한 성 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북한여성인권개선을 위한 가능성과 역할을 찾아보고자 한다.

1) 북한한 여성교류 현황(김원홍 외, 2015)

1991년 1월 동경에서의 첫 남북여성만남이후 2015년 12월 현재까지 북한한 여성교류는 약 31건이 성사되었다. 1991년-1993년간 4차례에 걸쳐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가 서울, 평양, 동경을 오가며 개최되었고, 종군위안부 문제와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모임이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학술이나 문화행사 등 개별적 주제로도 개최되었다.

먼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남북여성교류가 이루어진 행사를 살펴보면 첫째, 1991년-1993년간 4차례에 걸쳐 개최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이다. 오랫동안 기독교여성운동을 해온 이우정 국회의원은 1990년 일본부인회의 시미즈 스미코 회장을 만나, 북한여성과의 만남을 부탁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에 일본 기독교관련 여성단체가 한반도 분단해소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남한-북한-일본 여성의 연대를 촉구하면서 남북한 여성계에 세미나의 개최를 제의함으로써 성사되었다. 이후 1991년 1월(1차, 동경),

1991년 11월(2차, 서울), 1992년 9월(3차, 평양), 1993년 4월(4차, 동경)까지 4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1991년 1월 동경에서 개최된 제1차 세미나에는 남북한 및 일본 여성대표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종군위안부 보상, 한반도 비핵지대화 창설, 조·일국교정상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채택하였으며 이 모임에서 제2차 세미나의 서울 개최와 제3차 세미나의 평양개최가 결정되어 1991년 11월과 1992년 9월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1991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세미나에는 북한에서는 여연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김선옥 해외동포 영접부 부부장, 정명순 “조평통”참사, 최옥희 평양신학대학 대학원생, 홍선옥 평화군축연구소 연구원 등 15명의 대표단이 참여하였다. 1992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3차 세미나에는 남북한 및 일본여성대표 250명 정도가 참석하였고 남한-북한-일본에서 돌아가며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의 정례화를 합의하였다. 1993년 4월에 동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미나에는 남한은 이우정 국회의원과 이효재 「정대협」 공동대표, 김윤옥 기독교 여성평화연구원장, 북한은 최금춘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과 홍선옥 평화군축연구소 실장 등이 참가하였다. 그 후 1993년 10월 서울여성세미나 실행위원회가 제5차 세미나 개최를 북한에 제의하였으나 1994년 4월로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둘째,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한 여성이 처음 만난 것은 1993년 10월 21일-23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2차 종군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남·북한 등 7개국 대표가 참석하였다. 그 후 1993년 11월 7일 북한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종태위)가 평양에서 ‘일본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발생한 종군위안부문제 등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였고 여기에는 남·북한, 일본, 필리핀, 네덜란드 등 5개국 종군위안부 관련 민간단체가 참석하였다.

이후 1998년 10월 북경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와 여성의 인권에 관한 남·북·일본 여성’ 3자 회합이 이루어졌고, 2000년 3월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을 위한 상해 국제 심포지엄, 2000년 7월 개최한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마닐라 국제실행위원회 및 국제검사단’ 모임, 2000년 12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한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에 일본천황 공동기소’에 관한 모임이 개최되었다. 그 후 10여년이 넘게 만남이 없다가 2014년 3월28일-3월30일 3일 동안 중국 심양에서 남측 정대협이 윤미향 대표 등 24명과 6.15 해외측 여성분과위원회 관계자 10명이 조선민주여성동맹 김명숙 부위원장 등 10명과 함께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 모임을 가졌다.

셋째,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문제와 관련한 모임이다. 2000년 6월 13-15일까지의 남측의 김대중 대통령, 북측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제1차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① 자주적인 통일 추구, ② 남북 측의 상호통일방안에 대한 존중, ③ 이산가족, 친척방문의 확대 등 인도적인 방향 모색, ④ 경제 교류 및 사회문화교류 확대 등이다. 남북한 여성들은 6.15 공동선언 실천문제를 주제로 여러 차례 만났다. 2001년 8월 평양에서 개최한 “6.15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여성통일토론회”, 2002년 10월 금강산에서 만났던 “6.15 공동선언 실천과 평화를 위한 남북여성통일대회”, 2005년 9월에 평양에서 개최한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 2006년 3월 금강산에서 개최된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여성대표자회의’, 2007년 7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여성대표자모임’, 2008년 5월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북여성대표자회의’등이었다.

〈표 1〉 남북한 여성교류 성사된 현황(1989-2015년 12월 현재)

일시	장소	추진주체	북측대상자	내용
'91.1	동경	이효재(한국여성단체연합회)등 3명	여연구(최고인민회의의 부의장)등 3명	제1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91.11	서울	이효재(한국여성단체연합회)등 3명	여연구(최고인민회의의 부의장)등 15명 방남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통일과 여성, 평화와 여성’
'92.9	평양	이효재(한국여성단체연합회)등 30명 방북	여연구(최고인민회의의 부의장)등	제3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책임,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

일시	장소	추진주체	복측대상자	내용
'93.4	동경	이우정(국회의원)등 11명	여연구(최고인민회의 부의장)등 13명	제4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책임과 전후보상, 아세아 평화, 한반도 통일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93.10	동경	정대협	북한중군위안부및 태평양전쟁 피해보상대책위원회 관계자	제2차 중군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 참가(10.20~25)
'93.11	평양	정대협 (이효재등 2명)	종대위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평양 국제토론회 참가
'98.7	동경	정대협 (정진성등 4명)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홍상진 등)	일본의 전시하의 강제연행에 관한 동경심포지움 참가
'98.10	북경	정대협 (윤정옥등 6명)	종대위(부위원장 박명옥) 등 8명	일본군위안부문제와 여성의 인권에 관한 남·북·일본 여성의 3자 회합 (10.2)
'99.9	평양	우리민족서로돕기 (이길녀등 6명)	조선여성협회 (홍선옥등 3명)	남북여성교류협의
'00.3	상해	정대협 (정진성등 10명)	종대위 (박명옥등 3명)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상해 국제 심포지움 참가(3.30~4.1)
'00.6	평양	이희호 여사등 여성계 대표	여연구 등 복측 여성계 대표	복측 여성계 대표 접촉
'00.7	필리핀	정대협 (윤정옥등 7명)	종대위 (황호남서기, 정남영등 4명)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마닐라 국제실행위원회 및 국제검사단 모임 참가
'00.10	평양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등 3인	조선여성협회	노동당기념행사 참관차 방북시 접촉
'00.12	연변	장필화등 10명	김일성종합대학(공영숙교수등 4명)	남북한 및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관련 학술회의
'00.12	동경	정대협 (윤정옥등 150명)	종대위 (홍선옥대표, 정남영, 황호남 등 11명)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에 일본친황 공동기소
'01.2	평양	한국여성지도자연합 (김윤덕등 10명)	조선여성협회 (홍선옥등 2명)	「남북여성하나되기」토론회 개최
'01.8	평양	민화협, 통일연대여성위원회 (이효재등 22명)	조선민주여성동맹(최창숙) 조선여성협회(서옥선) 민화협 여성부(박영희)	6.15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여성통일 토론회
'01.9	캐나다	이우정(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등 7명	홍선옥(조선여성협회) 등 5명	한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연대하는 여성들 회의 참가

일시	장소	추진주체	북측대상자	내용
'02.10	금강산	2002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여성위원회 (353명)	조선여성협회관계자	6.15 공동선언 실천과 평화를 위한 남북 여성 통일대회
'05.9	평양	한국여성단체연합 (100명)	6.15 북측위 여성분과위원회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
'06.3	금강산	6.15 남측위 여성본부 (30명)	6.15 북측위 여성분과위원회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여성대표자회의
'07.5	평양	6.15 남측위 여성본부 (9명)	6.15 북측위 여성분과위원회	남북여성대표자모임
'08.5	금강산	6.15 남측위 여성본부 (20명)	6.15 북측위 여성분과위원회(12명)	남북여성대표자회의
'08.11	평양	전국여성연대(16명)	조선민주여성동맹	남북여성교류방안 토론회
'14.3.2 8-3.30	중국 심양	정대협(윤미향 대표 등 24명) ■ 6.15 해외측 여성분과위원회(10명)	조선민주여성동맹(김명숙 부위원장 등 10명)	조선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
'15 12.23	북한 개성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성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YWCA 등 60명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천주교협회, 6.15공동선언 북측위원회 등 43명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모임(공연 및 그림, 공예품 전시 등 문화교류)

자료: 김원홍, 김은주, 이수연, 장혜경(2015), [평화통일실현 여성사회협약연구]에서 재인용

또한 개별적인 주제를 가지고도 남북한 여성교류가 이루어졌다. 1999년 9월 평양에서 '남북여성교류협약'이 이루어졌는데, 남측은 우리민족서로돕기회의 이길녀 회장 등 6명, 북측은 조선여성협회 홍선옥 회장 등 3명이 참석하였다. 2000년 6월 남북한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평양에서 남측의 영부인인 이희호 여사 등 여성계 대표와 북측의 여원구 등 북측 여성계 대표들이 만났다. 2000년 10월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등 3인이 평양에서 개최된 노동당기념행사 참관을 위해 방북하여 조선여성협회 홍선옥 등 3인을 만났다. 2000년 12월 중국 연변에서 개최된 '남북한 및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관련 학술 회의', 그리고 2001년 2월 21일 평양에서 남측의 한국여성지도자연합 김윤덕 이사장 등 10명과 북측의 조선여성협회 홍선옥 씨 등 2명이 「남북여성하나되기」 토론회, 2001년 9월 캐나다에서 '한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연대하는 여성들 회의' 등을 개최하였다. 2005년 9월 평양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 100명과 6.15 북측의 여성분과위원회 관계자 등이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를 개최하였다. 2008년 11월에는 평양에서 남측 전국여

성연대 관계자 16명과 북측의 조선민주여성동맹 관계자가 모여 남북여성교류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5년 12월에는 개성에서 남북한 여성 100여명이 만나 공연 및 그림, 공예품 전시 등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였다.

2) 남북여성교류의 의의와 한계

남북여성교류는 남북한 간의 적대감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확장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주요 성과들을 보면 첫째, 민간교류 차원에서 분단 이후 최초로 상호만남을 이룬 것이다. 토론회와 대회 등을 통해 남북한 지도자급 여성들이 만남으로써 정부 중심의 교류형태에서 민간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교류협력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둘째, 남북한 여성들이 공동의제를 토론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고 국제 활동까지 연계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를 지속적으로 쌓아나갔다는 것이다. 셋째,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변화와 여성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장혜경, 2009).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첫째, 남북여성교류는 다른 남북교류와 마찬가지로 국제정치적 상황이나 남북한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성사여부가 좌우되어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둘째, 남북교류의 주체들이 특정집단의 소수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남측은 민간여성 운동가들이었고 북측은 정부조직의 여성들이었다. 북한 사회에서 사회단체는 노동당과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한과 같은 의미의 민간단체와는 다르다. 또한 교류 일정이 행사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성과가 일반여성에게 파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일반여성들과의 접촉이나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의 삶을 느끼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어려웠다. 셋째, 교류협력의 공동의제에 관한 것이다. 민족공동행사의 틀 안에서 남북여성교류들이 추진되어 여성문제나 여성인권, 성차별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못하였다. 민족적 의제에 밀려 여성의 지위와 인권과 관련된 의제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유보되었다. 단지 남북여성들 사이에 여성문제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 그리고 해결방식 등에서 확연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에 그쳤다는 것이다(김

숙임, 2006). 따라서 남북여성교류의 질적 양적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의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혀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여성들의 교류협력을 위한 공동의제의 발굴과 이해 및 실천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남북한 여성들의 실제생활과 관련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교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남북여성교류는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북한사회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단편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가 북한여성들의 생활과 의식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전개될 남북여성교류가 북한여성들의 삶의 변화에 미칠 영향은 과거의 그것과는 많이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성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남북여성교류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4. 결론

지금까지 북한여성인권개선을 위한 한국여성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반도에 사는 세 집단의 여성, 즉 남한여성, 북한여성 그리고 탈북여성들의 역할과 활동들을 살펴보았다. 북한여성들이 거주공간에 따라 겪게 되는 다층적인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 집단 간의 상호작용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극도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 내의 여성들과 이러한 상호작용과 소통의 구조를 만드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의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대한 요구를 내정간섭과 체제전복 의도로 받아들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인권개선을 주제로 한 북한과의 소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현실적 제약조건들로 인해 북한여성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방안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는 선상에서 북한여성인권개선을 위해 북한 밖에서 탈북여성과 남한여성들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중심으로 그 대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여성·아동인권보고서를 발간하는 일이다. 남한여성단체와 탈북여성단체가 공동으로 여성아동관련 국제규약에 기초하여 북한여성과 아동의 권리 및 인권실태 점검을 위한 리스트(checklist)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일이다. 여성아동권리관련 점검리스트는 현재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에 기초하여 만드는 것이 북한당국의 정치적 저항 및 반발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은 총 4개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이다. 물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북한 내 주민들의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분석해서 2014년 2월에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하였지만 이와는 별도로 여성·아동권리를 중심으로 침해사례를 분석하여 북한내부의 인권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에 대한 북한의 국가이행보고서를 반박하는 남한여성 및 탈북여성의 공동NGO보고서의 제출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4년마다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제출된 보고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검토, 심의하여 각국 정부에 권고문을 제출한다. 유엔은 심의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각국 정부의 여성NGO들에게 국가이행보고서와는 별도로 NGO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한국여성NGO들은 여성차별철폐협약한국NGO보고서를 정례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북한은 2001년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면서 2002년 최초보고서를 내고 지난 12년 동안 미루었다가 2016년 4월 11일에 2, 3, 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에 대한 NGO보고서를 탈북여성과 남한여성들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일차적으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북한 국가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한여성과 탈북여성들의 공동 작업을 통해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젠더적 관점에서의 남북여성교류의 설계가 필요하다. 남북여성교류 활성화는 남북한 여성들의 상호인식과 신뢰, 이해의 축적을 위해 매우 중요한 통일준비 과제이다.

남북한 여성은 남북한의 사회제도적 차이 외에 가정에서의 역할인식 및 가치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이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법제도적 측면에서 남녀평등을 보장하였지만 현실 생활에서는 가부장적 가치관과 남존여비시상이나 성역할 분업 등이 전통과 미덕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여성교류의 의제설정이나 추진과정 등에 있어서도 젠더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의제설정에 있어 민족적 의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여성 및 가족과 관련된 생활의제나 문화적 의제들을 제안하여 남북한 여성들 간의 의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남북 당국 간의 회의에 있어 반드시 일정비율의 여성들이 참여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남한여성들은 탈북여성이 겪는 인권문제, 성차별문제, 가족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현재 탈북자가 3만 명에 달하고 이들 중 70% 이상이 여성인 상황에서 탈북자 문제는 곧 탈북자 여성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치적 관점이나 논리보다는 여성주의적 및 가족주의적 관점의 반영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남한여성단체들의 탈북여성들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저조하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먼저 온 통일세대로서 북한여성의 삶이나 북한사회의 젠더구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자매애적인 관점에서 탈북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소통을 통해 북한사회에서의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탈북여성들은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여성권리 의식을 촉진시켜야 한다. 남한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북한여성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보편적인 민주사회가 보장하고 추구하고 있는 여성권리에 대한 의식을 촉진시켜야 한다. 북한에는 여성은 있되 여성권리의식이거나 더 나아가 양성평등의식이 없다.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대(大)가정 사회관에서 모든 여성들은 여성이 아닌 어머니로서 수렴된다. 어머니로서의 희생과 의무만이 요구될 뿐 민주사회의 당당한 주체로서 공적인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화된 탈북여성들의 삶에 대해 탈북여성 스스로가 여성주의 시각에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숙임, “여성이 참여하는 남북사회문화교류 발전방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62차 여성위원회 자료집, 2006.4.6
- 김원홍·김은주·이수연·장혜경, 「평화통일실현 여성사회협약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 고선주·김은주의, 「남북여성의 민주주의대화: 같음과 다름」, 한국여성정치연구소, 2013
- 김은주, 「구술로 본 북한여성의 삶Ⅰ」, 한국여성정치연구소, 2014
- 김은주, 「구술로 본 북한여성의 삶Ⅱ, 장마당 여성세대의 생활과 의식」, 한국여성정치연구소, 2015
- 김은주·장혜경·유시은, 「평화통일 국민공감대 형성방안연구」, 연세대학교 산학연구단, 2014.
- 박영자, “북한 젠더시스템과 양성평등한 평화통일과제”, [북한여성의 인권 이대로 좋은가], 김옥 이의원 주최 토론회, 2011.
- 장혜경, “남북한 여성교류의 현주소와 활성화방안”, KPI칼럼, 한반도평화연구원, 2009.4
- 제성호, “북한여성 인권의 실태와 과제”, 통일문제연구, 2007년 상반기
- 홍 민, “북한 내 여성의 인권현황”. [나는 고발한다-북한여성의 인권침해]. 박선영의원 주최 제27회 정책세미나, 2010.

국제 연대를 활용한 북한인권 운동 전략

■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북한인권 운동에서 성공적인 국제연대의 예: 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ICNK)

- 2011년 9월 8일 도쿄에서 창립총회를 가지고 창립
- 구성: 조직위원회 (10여명의 주요 활동가), 사무국, 회원 (전세계 15개 이상 국가에서 50여개 국제인권단체와 개별전문가 및 활동가로 구성)
- 목적:
 1. 유엔 내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북한인권문제를 조사하고 국제법에 근거하여 북한의 인권유린 내용이 중대범죄 중 하나인 '반인도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된다는 것을 밝히는 것
 2. 북한의 반인도범죄와 기타 인권유린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위원회가 권고하는 내용을 국제사회가 실행하도록 촉구
- 활동
 1. 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활동 (2011-2013년):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의 인권이사회 회원국가에서 러시아 중국 쿠바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2013년까지 EU와 주요 EU 회원국가들과 일본 정부 대상 COI를 설립하지는 advocacy 진행, 유엔 특별절차들(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WGEID, SR on Torture)에 관련 개별 청원서 100여건 제출, 기타 국제대회와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한 대중 캠페인 진행

2. COI 조사에 협조: 2013년 6월 제네바에서 COI와 첫 간담회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의 전반적인 배경과 구조를 설명, 그 해 7-8월 조사위원회의 비공개 및 공개 조사에 인권유린 피해자 및 전문가 총 100여명 이상 소개
3. COI 보고서 이후 활동: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의 결의안 통과를 위한 advocacy 활동과 인권이사회 회기 내 NGO 병행행사,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인권 운동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국제 캠페인 (독일 북한인권영화제-2015년 11월, 서울 COI 권고안 실행을 위한 국제대회-2015년 4월), COI 보고서 내용 확산을 위한 활동 (COI 보고서 모션그래픽스 제작), 기타 북한인권유린 내용의 구체화를 위한 활동 (요덕 서립천 구역 수감자 보고서 발표-2015년 7월) 등 진행

북한여성인권문제를 위한 연대 및 국제 인권단체 활용 및 협력활동

- 유엔 특별절차 대상활동:

여성과 아동에 대한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탈북과 함께 중국으로 인신매매 된 건 등), 여성폭력에 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여성차별에 대한 실무그룹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등에 개별청원서 (individual complaint) 제출 활동에서 영어 문건 작성 및 국제인권법적 자문을 경험 있는 국내외 단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NK Watch, ICNK 또는 국제적 인권변호사나 로스쿨 출신자 등의 협조로 희생자들의 인권유린 내용을 특별절차 측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개별청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검토 (UPR):

HRW, AI, FIDH 등 보고서 작성 경험이 풍부한 단체들에게 여성 희생자들과 접촉할 기회를 확대하여 여성문제가 실제 희생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잘 작성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 유엔 인권이사회나 총회를 대상으로 하는 애드보커시
HRW, AI, FIDH 등 제네바와 뉴욕에서 애드보커시 경험이 많은 국제적 단체를 활용하여 북한 여성인권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증언을 유엔 회원국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 국제 캠페인을 위한 국제 인권단체의 역량 활용:
세계 각 지역의 다양한 여성인권단체 및 여성인권활동가들과 협력하여 국제대회를 통해 북한여성 인권피해자의 목소리를 주요 국가들에서 퍼뜨릴 수 있다. 예) 2 월말 APPG, ICNK 가 공동 주최한 북한여성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대회, AI 독일 지부가 제작한 박지현 씨 동영상 등
- 기타 국제적인 여성인권단체들 혹은 여성인권활동가들 중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을 발굴하여 협조 관계를 형성, 협력활동 유도

국제연대와 협력을 활용하려는 단체들에 제언

- 연대의 설립이나 형성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연대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여성인권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목적하는 바를 연대의 목적으로 내걸고 관련 단체를 모집하는 것이 좋다. 그 목적은 실질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목적이 좋다. 즉, '북한 여성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연대' 식은 단체가 모이기도 활동을 이어나가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 연대가 아니라 여성단체 또는 탈북 여성으로서도 국제적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 목적만 충분히 뚜렷하다면 국제적인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이 충분히 모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목적이 더 중요하다.. 그 목적 하의 구체체인 활동을 위해서 국제단체들의 협조를 요청하면 된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좋은 예이다
- 국제협력과 연대를 활용할 주체가 명확한 의도와 사명감을 가지는 것이 좋다. 특히 여성인권문제로 국제사회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탈북 여성이 주최가 될 경우가 가


장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탈북자 커뮤니티와 국제사회 양자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제협력 활동에서 가장 큰 장점이다. 실제 피해자의 증언과 그 증언을 유엔에 제출할 보고서나 문건으로 만들기를 희망하는 단체들은 많이 있다. 또한 국제 캠페인이나 대중 행사, 세미나 등을 여성인권주제로 다루고자 하는 단체들도 부지기수이다.


- 이들을 잘 조직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한 개인이 인권운동을 위한 스타가 되는 것보다 뚜렷한 목적으로 유엔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만들어 내고 이들을 움직이고, 이 같은 협력을 통해 해당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전술이다.
-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조직하는 일도 관련 단체의 협력과 조언을 조직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ICNK 등 네트워크 형성에 경험이 있는 단체의 협조와 아이디어를 얻으면 된다.


2016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참가자 소개





이름	이성호	
직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경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 특허법원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수원지법,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지법 부장판사 - 대전지법 천안지원 지원장 - 천안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지법, 마산지법 판사 	


이름	시냐 폴슨 (Signe Poulsen)	
직위	서울유엔인권사무소장	
경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푸아뉴기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고문 - 리베리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사무관 - 인권감시보호단체 및 동티모르 유엔업무단 전환기정의연구소 소장 - 남부 키르키즈스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근무 -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인권사무소 근무 - 국제법률가위원회(네팔), 국제사면위원회, 국제평화단체등의 국제인권단체에서 활동 	


이름	마르주끼 다루스만 (Marzuki Darusman)	
직위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경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eport Indonesia 상임고문 - 부토 파키스탄 총리 암살사건 진상조사 UN 위원회 위원 - 스리랑카 인권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저명인사그룹 회원 - 인도네시아 국민의회 골카르당 소속 국회의원 -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름	한동호	
직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	
경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연세대 국제처 외래강사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아주대, 연세대 및 한동대 강사 - 국립외교원 객원교수 	


이름	윤남근	
직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	
경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 법률신문 편집위원 - 한국도산법학회 부회장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대한상사중재원 이사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 지방법원 부장판사(진주·부천지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판사(대전·수원·서울동부·서울중앙지방법원) 	


이름	이애란	
직위	자유통일문화원장	
경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대통합위원회 홍보대사 - 하나여성회 대표 - 북한전통음식 문화연구원 원장 - 경인여자대학 식품영양조리과 교수 - 서울전문학교 호텔관광학부 교수 - YBM 시사영어사 GLS 장학회 사무국장 -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북한 과학기술위원회 식품품질 감독원 	


이름	필 로버슨 (Phil Robertson)	
직위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	
경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시아와 한반도의 인권, 노동권, 취약계층 보호, 이주 및 인신매매, 난민문제를 다루는 휴먼라이츠워치 담당자 - NGO, 국내의 노동조합연맹, 그리고 UN 기구들과 함께 이주노동자 보호와 인신매매 금지를 위해 일하는 자문위원 및 변호사 - 유엔 기구 간 프로젝트 인신매매 프로그램 담당자 - 미국노동총연맹 노동자 후원 센터 동남아시아 대륙 담당 대표 - 미국 하원의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스테판 솔라즈 (Stephen Solarz)위원장) 멤버 	


이름	이소희	
직위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장	
경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동구정신보건센터 센터장 - 국립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임의 -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인턴 <p><학회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중독정신의학회 간행이사 - 한국여성정신의학회 사업부장 -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홍보위원회 이사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진료심의회위원회 위원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재난정신건강위원회 위원 	


<p>이름</p>	<p>신혜수</p>	
<p>직위</p>	<p>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p>	
<p>경력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 (현)유엔 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 (현)아시아태평양 여성, 법률, 개발포럼(APWLD) 이사 - (현)Equality Now 이사 -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객원교수 - 유엔 여성 차별철폐 위원회 위원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p>이름</p>	<p>안윤교</p>	
<p>직위</p>	<p>서울유엔인권사무소 인권담당관</p>	
<p>경력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부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본부에서 인권조약기구 (CCPR, CAT, CEDAW, CRC, CED, CERD 및 개인진정절차)와 유엔인권이사회회의 특별절차 등 유엔인권메타니즘 지원업무 담당 - 국제노동기구, 유엔무역개발회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컨설턴트나 인턴으로 근무 - 인권과 개발 관련 NGO와 대사관에서 근무 	


이름	미셸 키센코에터 (Michelle Kissenkoetter)	
직위	국제인권연맹 아시아국장	
경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DH의 유엔 대표 - Harvard Humanitarian Initiative 연구팀장 - 과테말라 Grupo de Apoyo Mutuo 법률자문위원 - 국제사법재판소 특별자문위원 - 유엔개발계획 자문위원 (레바논과 스리랑카)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팀장 	


이름	요안나 호사냐 (Joanna Hosaniak)	
직위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부국장	
경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인권시민연합 국제협력캠페인팀 팀장 - Helsinki Foundation for Human Rights 북한프로그램 담당자 - 주 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보좌관 	


이름	백범석	
직위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경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및 국제인권법) 강사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Georgetown 로스쿨 연구위원 	


이름	김종철	
직위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경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지원네트워크 의장 -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이름	박경서	
직위	동국대 석좌교수	
경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초대 인권대사 - 한국인권재단 고문 - Happy Bridge & Mondragon 경영 연구소 이사장 - 동국대학교 다르마 칼리지 석좌교수 - 유엔 세계인권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장 - 통일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이화학술원 석좌교수 -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국장 - 서울대학교 교수 	

이름	패트리샤 게디 (Patricia Goedde)	
직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장 - 한국인권재단 이사 - Washington School of Law Asian Law Center 연구원 - 태국 Chulalongkorn University 객원연구원 - 법무법인 광장(Lee & Ko) 미국변호사 	

이름	잠파올로 피올리 (Giampaolo Pioli)	
직위	유엔기자협회장	
경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uotidiano Nazionale 유엔 국장 및 미국특파원 - Quotidiano Nazionale 드라마 평론가 - University of Florence 부교수 	

이름	존 세가 (John Sagar)	
직위	주한 EU대표부 1등서기관	
경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대외관계청 - 유럽집행위원회 대외관계총국 	

이름	김은주	
직위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경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 - 평화하나, 여성들 포럼 대표 - 전) 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미래희망분과 위원장 - 전) 국무총리 여성정책조정회의 위원 - 전) 국회의장 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 	

이름	권은경	
직위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경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통일방송 국제팀장 - 데일리엔케이 영문 편집장 - 열린북한방송 국제팀장 -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무총장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총무 	

2016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 인 쇄 | 2016년 5월

| 발 행 | 2016년 5월

| 발행인 | **이 성 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 전 화 | (02) 2125-9840 | F A X | (02) 2125-0918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ISBN 978-89-6114-493-3 9334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